

第218回國會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錄 第3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2月20日(火)
場 所 農林海洋水産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현황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2. 독도개발특별법안
3.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4. 선원법중개정법률안
5. 독도일부지역대부에관한청원
6.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
7.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관한청원
8.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
9.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건)(계속)

審査된案件

- | | |
|---------------------------------------------------------------------------------------------------------------------------------------|----|
| 1. 현황보고(계속) | 1 |
| 가. 해양수산부 | |
| 나. 해양경찰청 | |
| 2. 독도개발특별법안(尹漢道 의원 대표발의)(尹漢道·權五乙·金洪春·金龍學·朴在旭·朴燾太·孫泰仁·辛卿植·李相培·朱鎭盱·許泰烈·金武星·金容甲·金浩一·朴明煥·柳興洙·李康斗·李富榮·李相得·李完九·鄭昌和·鄭亨根·崔鉛熙·李方鎬 의원 발의) | 53 |
| 3.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외 22인 발의) | 53 |
| 4.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53 |
| 5. 독도일부지역대부에관한청원(金元雄 의원 소개로 제출) | 58 |
| 6.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宋榮珍 의원 소개로 제출) | 58 |
| 7.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관한청원(金泳鎭·朴燾太·金敬天·金元基·尹鐵相·朴尙奎·張誠源·崔善榮·沈載權·李方鎬·朱鎭盱·金洪春·辛卿植·朴容琬·張正彦·元喆喜 의원 소개로 제출) | 58 |
| 8.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金龍煥·李完九 의원 소개로 제출) | 58 |
| 9.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건)(계속) .. | 65 |

(14시13분 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계속)

- 가. 해양수산부
- 나. 해양경찰청

(14시13분)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황보
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다음에 일괄질의를 하시되 위원님들의 첫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하도록 여야 간사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盧武鉉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8회 국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 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의회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신 해양시대, 청색혁명의 시대로서 인류의 식량·자원·공간문제를 해양에서 해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에서는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은 ‘해양한국21’을 국가계획으로 지난해 확정하고 각 분야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여건은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국제적으로는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양질서가 재편되고 있으며 각종 해양산업도 국제간 무한경쟁 상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 대응할 해양관련 제도, 투자재원 및 인력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해양수산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금년을 해양수산 인프라의 전면 재정비의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업질서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산업의 근본적인 틀을 새로 짜는 등 종합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근해 어업의 경우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어업의 단위생산성을 향상시킴

으로써 잡는 어업이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업인 조직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관리어업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법어업을 고립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업허가를 일체 정비하고 유사업종의 통합, 조업구역 조정 및 업종별 허가정수 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르는 어업의 육성도 서두르겠습니다.

대단위 양식단지과 바다목장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수산종묘 방류를 통한 자원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지난해 말에 어렵게 가닥을 잡은 수협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합리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리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중국어선을 하루 빨리 철수토록 하는 한편 협정의 발효로 피해를 보는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항만의 개발·운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물류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항만의 적기 시설확충을 위하여 기존의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항만별 물동량 변화에 맞춘 건설규모의 조정과 재정투자의 확대, 재원의 다양화 방안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항만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장기 개발계획 하에서 부산 신항 및 광양항 등 7대 신항만과 6개 권역별 항만 건설사업에 대한 금년도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부산·인천항에 대한 항만공사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상화물 정보화시스템을 재래부두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산·인천·광양항에 대한 관세자유지역 지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셋째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적선사가 원활하게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민간의 선박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선박투자회사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선박금융 이용방안도 마련함과 아울러 외항선사의 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의 완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비지니스(e-Business)시대에 대비한 사이버해운거래소의 설치를 추진하고 선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장기 수급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내륙수송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해운을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21세기 국가 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 해양바이오산업 등 신 해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첫 단계로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과 중소 해양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EEZ·대륙붕·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 등 기초 해양조사를 강화하고 지난해 착공한 이어도 해양종합과학기지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화호 및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을 위한 기초설계를 실시하는 등 대체에너지로서의 해양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의 조성과 해상교통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안에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해역정화사업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10개년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하여 시·도의 매립요구를 최소한도로 조정하고 연안정비사업과 갯벌의 보전·관리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IMO)가 요구하고 있는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ISM Code) 구축을 금년 중에 마무리 짓고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전국망을 확충하는 한편 부산항 및 인천항에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해상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범국민적인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외교·홍보 활동을 통해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함으로써 해양산업 진흥 및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의 전기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개척 정신을 확산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 어항을 다기능 휴양공간으로 개발하고 바다목장·마을어장 등을 생태형 체험관광자원으로 조성하는 등 해양관광자원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남북교역 지원을 위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수산자원의 공동이용을 위한 어업협력,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분야에서의 공동협력과제 추진 등 해양수산분야에서의 각종 남북협력도 남북관계의 진전추세에 맞추어 적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부는 해양부국 건설의 역군으로서 21세기 청색혁명의 기수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신해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그릇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기탄없는 질책과 비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洪承湧 차관입니다.
- 朴宰永 차관보입니다.
- 金成洙 기획관리실장입니다.
- 李龍雨 해양정책국장입니다.
- 徐廷皓 해운물류국장입니다.
- 金英南 항만국장입니다.
- 姜武賢 수산정책국장입니다.
- 朴德培 어업자원국장입니다.
- 金性奎 안전관리관입니다.
- 韓駿奎 공보관입니다.
- 梁炳奎 감사관입니다.
- 李殷大 비상기획관입니다.
- 申平植 국제협력관은 해외 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金成洙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企劃管理室長 金成洙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해양수산 비전 및 2001년 중점 추진방향,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비전 및 2001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비전은 현재 세계 10위권의 우리 해양력을 201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중점 추진방향은 해양수산 인프라의 전면 재정비에 초점을 두고 수산업의 전면적 구조 개편,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 등 일곱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수산업의 현재 여건은 국제어업질서의 재편과 매립·간척, 오염 등으로 인해 어장이 축소되고 잡는 어업의 기술발전으로 자원량을 초과하는 과다어획의 지속에 따라 자원감소 및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어업인 스스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체제가 미흡하고 불법어업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자원수준에 적합하도록 연근해 어선세력을 전면 구조조정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근해어선의 25%인 1,300여척을 감축하고 연안어선 중 자원남획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도 감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업인 조직화와 의식개혁을 통한 자율관리 어업체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촌계·수협이 일정수역 및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자율관리규약을 마련해서 자원관리 및 생산량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자율관리체제에 적합한 어업제도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어업허가의 일제정비 및 업종별 허가정수를 관리하고 유사업종의 통합과 조업구역·시기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정착으로 자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어촌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어촌·어항을 레저·휴식

·관광의 다기능 공간으로 개발하고 바다목장·마을어장 등을 체험·생태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의 합리화를 피하고자 합니다. 직거래를 확대하고 종합판매장 등 유통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가락동 등 수도권 도매시장의 시설 정비와 운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물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유통경로 다변화를 위해 농수산물 홈쇼핑 전문채널을 육성·지원하고 전자상거래 등 유통 합리화를 위한 규격화·표준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안전성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검사 인력·장비 보강으로 통관 검사 및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약청, 시·도와 합동점검체계 구축으로 생산·유통 일관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도 본격 도입하고 금년 1/4분기 중에는 한·중수출입수산물위생 관리에관한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한·중어업협정의 상반기 발효 추진과 한·일어업협정의 실리적 운용, 러시아 수역 입어권 확보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1/4분기 중에 수협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어가부채 경감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업 첨단기술 개발·보급을 통해서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화물의 99.7%가 항만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그 자체로도 수익성이 큰 유망산업이고 부산항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부가가치의 40%, 고용에 27%를 기여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큰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항만산업의 최근 여건은 동북아 경제시대를 맞아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6년 동북아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억TEU로 세계 전체의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환적화물 증가로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지난해에 세계 3위로 성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동북아 중심항 선점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특히 상해항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국내 항만에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국내

항만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00년 부산항 컨테이너 실적은 이미 2006년 계획을 초과하였지만 전체 SOC 중에서 항만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5년간 계획대비 시설확보율은 3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수준의 투자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2011년까지 투자소요규모의 2배 이상의 경제적 손실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96년에 수립된 국가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수정,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내용은 2011년까지 333선석을 추가로 확보하고 투자소요는 약 37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소요에 대해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간 1조원 수준에 이르는 정부재정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민자 및 외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운영체제의 효율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인천항에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기업경영원리에 입각한 항만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항만하역시설의 현대화 추진재원 조성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 항만노무공급을 상용화체제로 전환하기로 지난 2000년5월에 노·사·정간의 합의에 따라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상용화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대책을 미리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부산·광양항을 2대 Mega Hub-Port로 조기개발하기 위해서 부산신항 1단계 컨테이너부두 중 2005년에 일부 3선석을 조기완공·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항 2단계 컨테이너부두 8선석 중 4선석을 금년에 완공하여 화물유치를 확대하여 완전가동하고 3단계사업을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부산신항, 광양항 2단계 및 3단계 사업에 외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주요항만의 배후부지 개발 촉진 및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택·목포·제주항 등 전국 6대 권역별 거점항만을 개발하여 서해안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나

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외항해운은 운임수입 111억불로 이는 반도체, 자동차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84억불이 외국화물 수송에 의한 운임수입입니다. 그리고 연안해운의 경우 연안수송은 작년엔 여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해운산업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선사가 자금조달의 애로로 인해서 성장의 한계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해운은 거대자본 소요와 높은 금융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금융제도가 불비하고 또한 부채비율 200%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기 선박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4대 외항선사의 경우에 국제 해운경기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보유선박을 대량 매각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내륙운송 물류비가 증가함에도 연안 해상수송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미흡했습니다.

또 선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상대적인 고임금으로 인해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는 선박투자전용 펀드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가칭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을 추진해서 원활한 선박확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선사가 해외자회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겠습니다.

부채비율 200%의 기준적용 완화문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합니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선박을 부채비율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해운 물류비 절감 및 여객편의 제고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고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장기수급방안을 수립하고 선원복지고용센터를 조기에 설립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대중국 교역증가에 대비하여 한·중 카페리 항로를 확충하고 컨테이너운임덤핑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WTO 해운서비스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남미·중동·러시아 등 교역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양자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해양산업 육성과 해양문화 창달입니다.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해양산업의 기반확

충을 위해서 해양바이오산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연 2조원 규모의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을 창출하고 매년 20 내지 30 개의 해양수산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과학조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EEZ, 대륙붕, 태평양 심해저 자원탐사 등 기초조사를 강화하고 조력·조류 등 해양에너지의 실용화 추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미래 해양생활공간의 개발연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도해 지역의 21세기형 복합생활공간 개발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창의적 상상력과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산업시대에는 생산활동과 레저·문화·쾌적한 자연환경이 통합된 새로운 생활공간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잇따라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갖춘 우리 다도해지역에 대해서 금년 중에 타당성연구 및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연안관리로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수립하기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수립을 하며 시·도의 매립요구 면적도 최소한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매립수요의 약 10%이내로 반영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까지 1단계로 전국 201개소의 연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해양관리로 쾌적한 바다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서 2005년까지 연안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연안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특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갯벌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위해서 중요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갯벌을 해양생태·문화관광·교육 등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갯벌문제는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해양환경감시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범국민적인 해양문화 창달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로 해양산업 진흥과 남

해안 관광벨트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공식유치를 신청하겠습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 주제는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으로 잠정 정해졌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서 유치활동에 총력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으로 해양개척정신도 계속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해양안전관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안전분야의 여건은 선박의 시설기준 강화, 유조선의 안전항로 설정 및 현장중심의 안전활동 강화로 인해서 해양사고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대형오염사고는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상교통량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로 대형사고의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해양사고 최소화를 위한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외항선사에 대한 국제안전관리규약상의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고 항만 및 연안해역을 통합한 해상교통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선박의 항행안전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환경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DGPS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항로·주요항만에 조류신호기, 광파표지 등 항로표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바다구현을 위한 해양오염방제체제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 및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안전기준 미달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와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총체적인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지식경영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 합니다.

21세기 지식경제 강국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국가정보화계획에 따라서 해양수산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조달 EDI를 통한 정부 물품 인터넷 구매비율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조직 구성원의 지식역량을 강화해 나가 고자 합니다.

전문지식과 능력향상을 위한 소규모 학습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지식공유와 벽없는 조직 실현을 위한 지식향해포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경영합리화도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산하단체에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경쟁원리에 입각한 경영마인 드를 확립하고 각종 용역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IT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 해운거래소를 설치하고 해운업계의 e-Biz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 항만운영의 정보화로 항만서비스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실시간 가격정보 제공 및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 등 수산물의 유통정보화로 거래의 신속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와 어촌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촌정보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행정의 국제환경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 가고자 합니다. 해양수산관련 국제기구·협약에 적극 가입하고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민·관 국제 전문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협력분야 전담공 무원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전담공무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외 민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활용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 겠습니다.

남북한 해운합의서 체결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동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남북한 선박의 자유로운 운항보장 및 공동구난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물 동량 및 인적교류 증가에 대비한 항로 추가개설 문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항만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북부어장에서 시범적인 어업협력을 추진하 고 양식·어로기술 및 자원관리 협력방안을 추진하

고자 합니다.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 분야의 공동협력 과제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과 동북아 해양관 측시스템 구축사업에 북한의 참여의도와 북한 해 주만의 조력에너지 공동개발 가능성도 검토해 나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당면 현안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활동입니 다.

개요와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8년2월에 2010년 세계박 람회 유치를 정부 주요국가계획으로 확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해왔습니다. 99년11월 범국민유치위원 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BIE 의장단을 초청하여서 박람회 관련 국제세미나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또 6월에는 하노버 국제박람회에 우리 유치홍보관을 설치하였 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치위를 발족하고 난 다음에 주제개발 유치기 반 구성과 함께 대외유치교섭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관이 없는 약 20개의 국가에 유치교섭단을 파견을 하였고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유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과 브라질 카르도주 대 통령으로부터 지지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앞으로 유치활동계획은 중국, 러시아, 아르헨티 나 등과 현재 경합 중으로 현재로서는 유치성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경 험과 유치준비 조기착수로 유치기반 면에서는 우 위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교력과 개최후보지 국 제인지도 등에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치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유치위원회,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총망라하는 유치활동전개가 필요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지금 한참 보고하시는데 조금 요약해서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海洋水産部企劃管理室長 金成洙 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유치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 해서 국회내에도 유치지원단을 구성하여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보고 그대로 읽으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企劃管理室長 金成洙 예, 다음 수산업협동조합 경영정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정상화에 관해서는 지난해말 의원입법을 통해서 협동조합법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지원을 위한 재산실사가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14일은 수협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도·경제부문의 부실을 포함한 공적자금 투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서 금년 1/4 중에는 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중어업협정 조속 발효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부산·인천항의 항만공사제 도입관련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0년6월에 항만공사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마치고 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부산, 인천에 각각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항만공사 설립에 관한 기본원칙을 합의를 했고 현재는 설립특별법안 마련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만공사의 기능과 위원회 등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에 대한 정부지원 그리고 항만요율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등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의 설립 기본개요는 설립 근거법으로 항만공사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항만공사의 자본금은 국유재산인 항만재산 현물출자로 되겠습니다.

항만공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3월까지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마치고 금년 6월까지의 국회에 항만공사법이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항만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내용입니다.

이 수정사유는 최근 급증하는 컨테이너 물량 그리고 저희가…….

○鄭哲基委員 중복된 내용이니 생략하세요.

○海洋水産部企劃管理室長 金成洙 예, 이것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 부의 입법추진은 제정 5건, 개정 7건 등 12건의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珪植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해양경찰청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경찰은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해상치안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 조직원이 일치해서 평온한 해상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바꾸고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해양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서 광역경비체제 구축, 해상치안질서 확립,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양오염관리 철저, 국민만족 봉사행정 실천을 5개 역점 업무로 선정하여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1세기 해양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경찰이 해양강국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李旻祐 치안감입니다.

경무국장 李尙奎 경무관입니다.

경비구난국장 李相富 경무관입니다.

정보수사국장 崔廣賢 경무관입니다.

해양오염관리국장 安兌煥 이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해양경찰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기 보고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해상치안 성과와 전망, 역점 추진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해상치안 성과는 해양경비·경계와 어로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62척

나포 등 또 특정해역 출어선 13만 5,000여척의 어로보호 경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생침해사범 척결을 해상 강·절도 폭력 등 3만 여건을 단속했고 밀입국 1,544명, 밀수 25건, 마약 사범 24건을 검거하였습니다. 해상치안기관장 정례회의 등 인접국과의 해상치안기관간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해양안전관리 및 구조체제를 강화하여 여객선, 유·도선 안전사고를 현저히 감소시켰고 조난선박 657척 중 549척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으로 면허시험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해양오염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서 선박검사 8만 4,000여척, 시설·업체 출입검사 1,400여회, 오염사범 단속 1,64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국가방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국가방제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새천년 신해양경찰 구현을 위해서 국민만족 봉사행정에 주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해상치안 전망입니다.

해상경비는 한·중어업협정 발효 예정 등 어업질서 변화에 따른 경비해역 대폭 확대로 경비수요가 가중되고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협력 확대 등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해상경계태세가 요구되며 해상범죄는 연안해역 어획감소에 따른 조업구역 침범,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의 증가가 우려되며 불법취업 목적의 밀입국, 농·수·축산물의 밀수, 마약 등 국제성 범죄 증가가 예상됩니다.

해양안전관리 면에서는 물동량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고속화 및 입출항선박 빈번에 따른 대형 복합해난사고 위험성이 증대되며 소득수준 향상 및 여가시간 증대 등 국민의 해양이용도 지속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개연성이 많아지며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규제 강화 지속, 육상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 총량증대와 오염원 다양화 등 해양환경 저해요인 확산 및 폐기물·폐선 불법방치 등 해양환경사범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 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째, 광역경비체제 구축입니다.

해양주권 수호태세 강화를 위해서 불법조업 외

국어선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서 EEZ 관할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대형함정 5,000t급을 조기건조 배치해서 독도해역 감시역량을 배가하고 영해주권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상경비 과학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서 중·장기 경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어선 안전조업을 위해서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배치하고 신속한 대응태세 유지를 하고 한·일, 한·중 어업 협정선상의 순찰강화로 침범·피랍 방지를 하며 출어선 선단편성 유도 등 어민계도와 홍보활동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관·군·경 작전요소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CPX·FTX 훈련강화 및 현장 경계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해상안전치안질서 확립입니다.

해상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해서 바다가족의 생업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하고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성 범죄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밀입국, 밀수 사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형사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위주의 수사체제가 정착되도록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촌계 등 자율방범기능 활성화와 민·관 협력 치안활동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해상범죄 대응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과학수사기반을 구축하고 범죄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며 수사요원 정예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객선,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체계화하며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및 해상교통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안전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을 지정하고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국민여가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해난사고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해역특성에 맞는 해난사고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인접국과 대형해난사고 수색 구조협력과 해양경찰의 국제위상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해양오염 관리입니다.

예방우선의 해양오염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하

겠습니다.

육·해·공 입체감시를 전개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해양오염사범에 대해서 일제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폐기물 해양배출에 적정을 기하도록 폐기물 배출해역 해양오염 저감방안을 강구하고 배출해역 환경오염도 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역량을 강화해서 지역별 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집행능력을 제고하며 해양오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민만족 봉사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국민만족 증진시책을 지속발굴해서 규제·제도개혁, 국민불편 해소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며 대민봉사 활동영역을 넓혀서 생업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해상 민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인터넷 활용, 전자시스템 민원처리 확대 등을 적극 강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해양경찰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 업무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성화로 현장 적응력을 배양하며 지휘책임제 실시 등 관할해역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아주 간략하고도 요점 빼놓지 않으시고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權五乙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지요.

○**權五乙委員** 해양경찰청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조기정착 해서 시험대행기관 10개 지정, 응시지역 확대 5개에서 10개 했는데 이 현황의 응시지역, 시험대행기관, 여러 가지 조건…… 여기 담당국장 와 계시지요?

○**海洋警察廳警備救難局長 李相富** 예.

○**權五乙委員** 이것 전부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금지구역 지정운영 이런 것도 하여튼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좀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저도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해상경비 철저 그 다음에 어로보호 활동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어선 감시 강화 등 이 부분에서 앞으로 많은 역할이 증대되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이런 장비라든가 체계상의 비교를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李方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李方鎬委員** 지금 수협에 공적자금 투입이 늦어지고 있는데 다른 타 부처와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은 다 끝났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李方鎬委員** 그런데 왜 자꾸만 그것이 지연이 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우선 지난번에 조사한 것하고는 달리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새로운 실태 조사를 다 하고 그래서 손실규모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실사하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규정상 실무적인 문제가 저쪽에서 재경부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그런 문제는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서 공적자금이 빨리 투입이 됨으로 해서 수협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李方鎬委員** 이제 곧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그 회담을 해나가면서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총체적으로 대단히 부실한 협정으로 남았다 이렇게 밖에 평가가 안 됩니다.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양자강 유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의 자세라든지 또 가서명 이후의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태도 그리고 또 과도수역의 획정방법 그리고 조업질서유지지역에 대한

우리 어장 확보문제, 이런 것이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이 된 것은 할 수 없더라도 특히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에서의 우리 어장확보 문제가 좀더 명확하게 추진이 되고 특히 중·일잠정수역 북단지역에서의 우리 조업권 확보 문제가 명확하게 좀더 구체적으로 확보가 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조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특별한 각오로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정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과도수역 같은 것도 좀더 남방으로 내려줌으로써 해서 동시에 양자강 유역문제도 같이 해결이 됨으로써 양자강 유역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문제를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또 과도수역 문제도 평면적으로만 해서 '면적이 같다' 그것으로서 정부가 협상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자꾸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장성 문제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소한도 1대 5 내지 1대 10 정도의 어장성 문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면적으로 확보했다는 자체 가지고 자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가서명 이후에 중국 측에서 양자강 유역에다가 새롭게 금지구역을 만들어서 협상을 진행시켰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양자강 유역에 그들이 말하는 금지구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을 지금 좌표로 말씀드릴 수 없고 여러 차례 지도로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李方鎬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체로 중·일잠정수역 북단지역에 광범위하게 그들이 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6월부터 9월까지 금어기간을 설정함으로써 해서 우리 안강망이라든지 저인망들의 조업이 상당히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국제법상 어떤 근거로 해서 중국 측이 이 부근에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금지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국제법상에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어차피…….

○**李方鎬委員** 그런데 근거가 없는데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을 왜 우리

가 수용을 해야 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점은 우리의 특정해역도 국제법으로만 따지면 또한 중국의 입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李方鎬委員** 특정지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모르겠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러면 이 부근에 그들이 아무런 국제법상 뒷받침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금지기간, 금지구역을 선포했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이어도 부근에다가 이것은 장차 우리 EEZ에 들어올 지역이니까 우리도 이 지역에 우리 국내법에 관계될 수 있는 우리에게 유리한 어법을, 그리고 금지기간·금지구역을 선포하더라도 그들이 말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보시기에 따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한·중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받아낼 것은 받고 또 내줄 것은 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협상의 전체과정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양자강 영해에 연접된 일부 구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체적으로 불가피하고…….

○**李方鎬委員** 그런데 전혀 거기에 주장의…….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또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李方鎬委員** 주장의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제주도 남방부근에다가 이러한 유사한 것을 우리도 근거규정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대개 이것과 대응하는 것을 우리 특정해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특정해역이 전부 한국의 영해가 아닙니다. 특정해역의 일부는 영해이고 나머지 일부는 영해가 아니지만 존중받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EEZ의 권한이 미치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조업해왔던 이 지역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굴복을 해서 일부 양보를 하고, 그러면 우리도 대응방법으로 이어도 부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외교적으로…….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해서는 한·중간

에 합리적인 어업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고 서로 생떼 쓰기가 돼서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그들이 몇 년 동안 얼마나…… 사실 98년11월에 가협정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법을 만든 자체도 그들이 국제관례를 벗어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수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가서명 이후에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협상에 나섰던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공무도 열심히 수행해 왔고 한·일관계에서 한·일어업협정을 통해서 경험도 익혔고 실제로 여러 보고서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간 190회의 국제회의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부처로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바지저고리는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李方鎬委員 그런데 자꾸 장관의 뜻이 일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부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그리고 이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해수부 한 것이 전부 다 일방적으로 다 옳고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이런 식의 논리는 말이 안 되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고 제가 시인을 하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시인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밤잠 안 자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도 참 일할 맛 안 나지요.

○李方鎬委員 아니, 우리가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 아닙니까? 과도수역 하나만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같은 과도수역인데 왜 중국측은 31도 50분이고 우리는 32도 11분으로 올라가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과도수역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올라가고 옆으로 빠지고 중국은 내려가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우리 쪽 과도수역은 동쪽으로 휘어지면서 연장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한국 쪽의 과도수역이 조금……

○李方鎬委員 이것은 면적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조금 전에 북위의 금을

가지고, 선의 위치로 따지시니까 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李方鎬委員 그런데 같은 면적이라도 어장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李方鎬委員 그리고 전임장관들은 이 과도수역을 내려 가지고 이어도 부근에 우리의 EEZ를 확보하겠다고 수없이 공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것이 빠졌다 이것입니다. 장관이 그것을 수없이 공언할 때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됐고 이런 부분은 사실 최선을 다 했는데 좀 미진하다, 국민이 이해를 해달라, 이런 논리로 나가야 되지 이것은 무조건 잘했는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 잘못된 것을 질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맛으로 일하겠느냐, 그것이 장관의 답변 자세입니까? 국민들에게 할 말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언가 좀 잘못된 것, 미진한 것도 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모든 협상은 다 욕심대로 안 되어서 아쉬움은 남습니다.

○李方鎬委員 최소한도의 것은 건져야 될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모든 협상은 끝나고 나면 일방적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남지만 그러나 이것을 부실한 협정이다, 이렇게 협정 자체로서 부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李方鎬委員 대단히 부실한 협정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委員長 咸錫宰 李方鎬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李方鎬委員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李方鎬委員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협정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위원장 선거를 하려고 날까지 잡았는데 해수부의 중용에 의해서 선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 자리로 해수부의 국장이나 어떤 사람들이 내려가기

위해서 감사위원장 선거를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보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장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이…….

○**李方鎬委員**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감사위원장 자리에 해수부의 간부가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 일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李方鎬委員** 들은 바는 없고, 앞으로 없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해수부 공무원 중에 그 자리를 넘겨다 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方鎬委員**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의 일은 제가 단언을 안하겠습니다.

○**李方鎬委員** 당장 지금 선거를 해야 돼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번에 감사위원장 자리에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李方鎬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泳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泳鎭委員** **金泳鎭** 위원입니다.

해양경찰청장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심기일전해서 해양경찰청 업무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면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신임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대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태풍 경보나 주의보를 내릴 때 먼 바다 혹은 연근해 모두 거의 한 지역처럼 비슷하게 내리기 때문에 현지의 우리 지선어민들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먼 바다에 내리고 있는 경보나 주의보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쪽에도 같이 적용됨으로써 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교통이 차단되고 또 그런 주의보에 따라서 해양경찰은 단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金淇春** 위원께서 방송사에다 이것을 세분해서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

자고 해서 기상특보를 하는 기상청장에게 해양수산부장관이 또 우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런 뜻을 요청한 일도 있습니다.

섬이 많은 서남해안 일대 지역에서 비현실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청장께서는 한번 일제히 파악하셔서 현지의 지선어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진위를 정확하게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이 함께 검토를 해서…….

“이제 이 문제는 정말 현실성 있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기상대에서 그렇게 주의보가 내리니까 불가피합니다.” 하는 얘기로 쳇바퀴 돌 듯 해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선어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 현황을 한번 일제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알겠습니다.

○**金泳鎭委員** 그 다음에 두 번째, 검문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지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해상범죄도 단속해야 되고 요즘 특히 밀수가 많고 밀입국도 많고 또 심지어는 해적도 일부 있다고 하니까 검문은 필요한데, 아주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검문이 매회 똑같이 반복됨으로써 검문이 별로 필요없는 지역에도 어선이 저쪽으로 돌아가면 기름도 절약되고 빨리 가기도 해야 되고 요즘 서남해안쪽에는 양식장 같은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아주 힘이 드는데도 그쪽으로 꼭 배를 대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검문을 꼭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을 호소해 오고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청장께서 검문·검색의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벗어나서 우리 어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진단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를 되살릴 의지가 있는 명의는 진단과 처방이라는 차원에서 진단이 잘 되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발휘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법어업이나 해상단속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환장을 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늘 빈번하게 발생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요즘은 마이카 시대니까 다 자가용도 있어서 육지에 있는 분들은 마음 먹으면 금방 가고 교통수단도 좋고 일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차원에서 육지에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소환장을 내리면 그냥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 먼 바다에 있는 완도군의 청산도에 있는 어민을 목포 해양경찰청으로 불러들인다고 그러면 청산도에 있는 분들이 풍진스타호라는 배를 타고 육지에 갔다 오는 것이 고통으로 해서 서울에 갔다 오는 버스비보다 더 들어요.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가까운 마량지서라든가 이런 데로 출장을 가서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정도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을 모아 가지고 수사요원이라든가 전담요원이 현장에 언제 가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것에 대한 조사는 바로 가까운 지역이니까 마량지서에 와서 받도록, 이제는 발로 찾아가고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 해양경찰도 그 면모를 일신하고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앞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대한 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해양경찰 직원 중에 장기근속자, 총 근무연한에서의 장기근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지역에 오래 복무하는 장기근속자가 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사적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요지가 있어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한지가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은 불이익이 있고, 요지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양경찰 직원의 특정지역 장기근속관계를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지역에 어떤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임 해양경찰청장에게 우리 어민들이 바라는 이 네 가지의 직소민원사항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제가 대신 전달하면서 신임 청장께서 아주 단단한 각오로 한번 일제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세우셔서 이 문제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수부의 2010년 해양EXPO 유치와

관련해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지요?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금년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5월에 신청하면 BIE 규정상 6개월만에…….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6개월간 공고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서 2002년12월경에 최종적으로 비밀투표를 통해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泳鎮委員** BIE 회원국이 몇 개국입니까?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88개국이라고 합니다.

○**金泳鎮委員** 그러면 지금 이미 유치경쟁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상해라든지 특히 지금 잠재적 경쟁자가 중국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민간기구에다가 이것을 맡기고 또 유치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로 하여금 활동을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주무부에서는 이 88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産部長官 盧武鉉**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2010년 박람회지원위원회를 했습니다.

각료 대부분이 지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에서 해외공관장을 관할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또한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재외파견기관이 있는 각종 기관들, 무역기구라든지 또는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기관들 그리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에 있어서 중요성이 국민적 열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열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당장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가 방향을 잡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金泳鎮委員**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적절한 회의를 하신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는 별로 그렇게 큰 경쟁국이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그중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정한 2010년 해양EXPO, 내년 12

월이면 투표까지 하게 되는데 일본이 유치해 간 경우를 보면 심지어 BIE, 그 당시 8년 전에 84개국이었었는데 회비를 못 내고 있는 조금 규모가 작은 회원국의 회비까지 막 대납해 주면서 한 표를 얻으려고 굉장한 유치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전에는 민간기구 그 다음에 정부, 의회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같이 유치활동을 벌였습니다. 그것이 주효해 가지고 일본이 유치를 해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사례를 준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절대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제시된 것이 인도네시아 와히드 대통령하고 브라질의 카르도주 대통령으로부터는 지지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88개국에서 2개국의 지지가, 뭐 더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에 의하면…….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사례로 한 것이고 그 이외의 접촉범위는 좀더 넓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남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金泳鎮委員** 아무래도 해당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지만 해외공관장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해외공관장회의가 금년 1월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공관장회의 때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그 공관장들이 활동할 그런 상황들을 의통부가 관여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공관장 회의할 때는 외교부에서 기회를 주셔서 장관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왔고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공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泳鎮委員** 제가 해양경찰청장에게 물었던 몇가지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在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旭委員** **朴在旭** 위원입니다.

먼저 국적선사의 선박금융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운업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적인 기업 부채비율 200% 적용은 문제가 있으므로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외적용을 할 것을 촉구했으며 IMF 이후 국내선박금융제도의 붕괴와 해외자금차입의 어려움으로 신규선박발주가 거의 없어 이 상태로 방치하면 조만간 국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채비율문제나 선박금융제도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금융제도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도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투자자들의 자금과 국내의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 선박건조에 투입하는 것으로 독일의 K/G Fund 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내 금융, 조세제도 등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기존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 이 기회에 과감히 정비하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건조된 선박의 국적문제에 있어 조세나 금융, 행정편의 등의 이유로 편의치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이 기회에 우리도 편의치적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검토해 볼 것을 촉구를 합니다.

해수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이 구조조정에 관해서 앞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수협은 작년말 공적자금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전제하에 자체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매년 3,000억원씩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매년 1,500억원씩 공적자금을 상환하여 2016년까지 이를 모두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말 수협법을 개정하여 지도·경제사업 부문의 미처리 결손금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국회를 통과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공적자금지원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경제부문의 미처리 결손금은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재경부는 주

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월 8일부터 2월15일까지 수협의 자산을 실사한 결과 미처리 결손금 규모는 총 9,887억원이고 그중 비신용사업부문은 475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IS비율 10%를 맞추기 위해서는 1조 2,000억원이 필요한데 부처간 견해 차이로 공적자금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초래되는 손실을 보면 단순손실로만 1조 2,000억원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예보채금리 6%를 적용시 하루에 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부실우려로 인한 예대금 실적저하, 유동성 악화로 지불불능사태를 초래하고 중앙회 신용사업 붕괴로 조합 상호금융의 동반부실 초래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손실까지 합하면 공적자금 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범규의 자구에만 매달려 이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요, 형식주의 관료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수부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일반금융기관의 부실도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금융업무로 인한 부실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공적자금 투입시 업무를 분석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수협 자체가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의 부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 공적자금이므로 수협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금융업무와 비금융업무로 나누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조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작성된 수협의 구조조정안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항만관세자유지역 도입에 관해 물어 보겠습니다.

항만관세 자유지역 지정은 항만이 국제물류거점인 Hub-Port로서의 효율적 역할을 최대화하여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제도의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 외에도 국가 안보적 문제까지 관련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수부는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치밀하고 신중한 준비를 거쳐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세자유지역 지정항만의 국제물류거

점으로서 기반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 자료에 의하면 부산, 광양,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연간 2만 3,000명의 고용창출과 20억 7,000만불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데 실제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지역과 비자유지역을 구분한 울타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범죄, 탈세, 밀수, 전염병의 유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수부장관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양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르는 해양경비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막대한 어장의 손실을 초래한 한·일어업협정과 달리 한·중어업협정은 중국어선의 남획을 방지하고 우리 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득이 되는 협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협약대로 하면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조업척수와 어획량을 어떻게 감시하고 지켜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측 EEZ에서 조업허가 없이 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과도수역에서는 협정발효 후 4년까지는 상대국 허가 없이 조업이 가능하므로 이들이 과도수역을 넘어서서 우리측 EEZ를 불법적으로 침범하여 조업할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하고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양경비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하였지만 이제 우리 해양경찰은 광역경비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광역경비체제를 위해 대형경비함정을 동해 3척, 남해 3척, 서해 4척 등 10척을 배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EEZ면적이 44만 7,000km²로서 국토면적의 4.5배나 되는 광범위한 수역인데 10척의 경비함정으로 효과적인 경비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비행기와 헬기 두 대를 추가 배치한다는데 어느

해역에 배치하는지 답해 주시고 현재 비행기와 헬기 배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에는 독도 영토수호와 서해에는 중국어선의 침범방지가 중점을 두어야 할 해상경비 업무일 것입니다. 경비함정과 정찰기, 헬기 등을 보강하여 한·중어업협정 체결 후의 우리 해역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실적을 보면 99년에 80척, 2000년에 62척이며 계절별로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제재는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EEZ어업법에 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상기 나포어선에 대해 범규정대로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규정대로 엄격히 벌칙을 부과해야만 한·중어업협정 체결의 실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해경청장은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文錫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錫鎬委員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농어업재해대책법 알고 계시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文錫鎬委員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법 자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니다.

○文錫鎬委員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 어병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 어병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에 넣어서, 이번에 폭설도 있었고 구제역도 있잖아요? 그런 피해 보상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형평에 맞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기억합니다.

○文錫鎬委員 그런데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동안에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文錫鎬委員 한·중어업협정이다 뭐 여러 가지 바쁘셨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늘 1차 심사를 했고 내일 또 심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실무자들은 아마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무자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께서 실무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제역 같은 가축병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병 중에 이리도 바이러스라는 병이 있어요. 아실 것입니다.

작년에 천수만에서 발병해서 손쓸 겨를이 없이 그 병이 급속히 확산이 되어서 70억의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 사오년 전에 남해안에서 발병을 해서 수백억의 양식물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한번 발병이 되면 손쓸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이 대책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함께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한·중어업협정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협정안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비교적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잘 되었다,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 협정을 구체화하는 입어협상이 제대로 될지 참 저희도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과거 한·일어업협상 과정에서 너무나 굴욕적이고 너무나 현실을 도외시한 그런 일방적인 협상에 우리가 밀려왔기 때문에 이번 한·중 입어협상 과정에서도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 위원님께서도 여러 분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마는 그것도 앞으로 입어협상에 대비한 우리 해양수산부의 마음자세를 좀 가다듬고 각오를 다지게 하자는 그런 의도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어협상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착실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저는 전략적인 면을 한번 여쭙어 보려고 해요.

어업협정이 우리도 비준이 되어야 되지만 중국도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국무원에서 비준합니다.

○**文錫鎬委員** 지금 중국은 비준이 되었나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아직 안 되었습니다.

○**文錫鎬委員** 언제쯤 비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외교통로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중국은 우선 이 부분의 협정발효를 서두르지 않는 편이고 절차상 우리 국회 비준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쪽에서 계속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겠다는 수준의 입장입니다.

○**文錫鎬委員**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중국이 아직 비준을 안 했다면 우리가 입어협상과 이 비준을 전략적 내지 전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업협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중국에 비해서 비준을 해주게 되면 그뒤 세부적인 입어협상에 있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가서명된 기본협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입어교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척수와 어획량 그 다음에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방한계선 이것이 큰 틀이고 이점에 대해서 합의가 되고 나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자라는 것이 양쪽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발효시간을 정해 가지고 세부 입어절차에 관해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세부 입어절차에 관한 협상인데 이 큰 틀까지 정해지고 나면 한국은 정말 아주 유리해 지고 답답한 것이 없어집니다.

○**文錫鎬委員**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가서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서명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제일 큰 문제가 상호 입어척수와 입어 어획량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조약은 상호발효시키고 비준서를 교환하고…….

○**文錫鎬委員** 그러시면 우선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이 과연 입어협상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면도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믿지만, 국민들이 또는 우리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 큰 줄기에 대한 입어협상이라도 완료가 된 다음에 국회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하고 그때에 차라리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비준서가 교환되고 발효시기를 결정하고…….

○**文錫鎬委員**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따가 장관님 답변하실 때 일괄답변하시면서 이번에 비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文錫鎬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도 항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산항과 광양항이 소위 Mega Hub-Port다 이렇게 되어 있고 6대 권역에 거점항만을 앞으로 건설을 하고 또 기타 항만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항만국장 계신가요?

6대 권역의 거점항만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경기지역,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文錫鎬委員** 그중에 중부는 어디입니까?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평택…….

○**文錫鎬委員** 충청권은 어디입니까? 죽 한번 불러보세요.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충청도가 대산지역도 있고…….

○**文錫鎬委員** 충청도쪽에도 거점항만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항만국장이 거점항만이 어딘지도 모르고 다닙니까?

충청도 거점항만이 어디예요?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보령지역을 신항만으로 지정을 했는데…….

○**文錫鎬委員** 보령이 거점항만입니까?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아직은 거점항만이
라고…….

○**文錫鎬委員** 아직 안 정했습니까?
○**海洋水産部港灣局長 金英南** 대산이…….

○**文錫鎬委員** 대산이 맞습니까?
올해 대산항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난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이 대산항
개발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산지역에 대
죽공단 그리고 성연공단 또 지곡공단 해 가지고
국가공단을 포함해서 3개 공단이 있습니다.

큰 회사만 해도 현대정유, 현대석유화학, 삼성중
합화학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 기
아자동차, 8월1일부터 연산 30만개의 오토미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우주항공도 그쪽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
면 이 물동량으로 인한 그 손실이 연간 한 300억
에 이른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설계가 좀 늦었다 하는 것도 있겠
지만 금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
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항구
가 거점항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항만을 국가가 투자하느냐 민자유치하느냐
이것에 관해서도 작년에도 똑같은 보고하셨어요.
작년까지 항만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그러시더니 이
번에 보고하는 것도 보면 다시 한번 재수립하겠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내년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장관님, 이것이 백년대계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문제에 관해서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못 가지고 있는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일일이 조사해서 타당성을 판단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文錫鎬委員**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라서 주관
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장관님 이하 여
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孫泰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孫泰仁委員** **孫泰仁** 위원입니다.

제가 항만공사 설립에 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
다 해수부에 많은 자료도 요구했고 촉구도 해왔습
니다. 지금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해수부안 하고 항만공사 설립에 따르는 부처간에
이견이 아직 조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
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두 개의 법이 서로 상충되느냐, 상충되지 않느냐에
관해서도 어느 부처에도 뚜렷한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획예산처 실무선이 계속 책임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지금도 인사가 마무리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만 바쁘네요 해양수산부에서
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협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있더라도 그
것은 그것대로 모든 공사가 개별공사법과 정부투
자기관관리기본법의 이중적 규제를 받게 되어 있
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일반
적 운영위원회의 규제는 마찬가지로 항만공사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지만 항만공사 설립과정에 있어서는
이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만위원회라는 것을
두는 것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해
양수산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실무자들이 인사 중에 있어 가지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점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런데 자꾸 시기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6월달까지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
고 7월에는 발족을 시킨다고 말씀을 주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일정을 보더라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일정이거든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자체
들의 우려는 항만공사의 자율성이라든가 독립성
그리고 지자체의 참여 등 합의된 내용대로 특별법
에 반영되어서 정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항만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관한 회의론 내지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데 孫 위원님, 걱정을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의 진행을 챙기고 있는 장관조차도 보고받지 않은 우려입니다. 그 우려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다든지 지금 다른 부처하고 조율이 안 된다든지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또 제가 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계속 묻고 있는데도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라는 것이 조금 앞질러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부처간에 토의되거나 의견을 나누는 적이 전혀 없네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관에게까지 아직 보고할만큼 갈등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고 우리 실무자들은 적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孫泰仁委員**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공공부문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다 발표된 내용이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그래서…….

○**孫泰仁委員**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금방 나타난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부처간에 이견 조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든 실무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업무를 함께 협의해야 될 상대 부서의 실무자가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서 들고 가 가지고 그 집 문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면 이리다가 더 늦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겠습니까마는…….

○**孫泰仁委員**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어떻게 어떻게 문제가 된다 이 특별법안에 어떻게 어떻게 상충이 된다 그 문제만 해결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될 것

이 없고, 지금 해수부 입장대로 끝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특별법안의 초안이라도 지금쯤 나와야 될 시점이란 말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문제는 실무적 협의를 아직까지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획예산처에서 이것을 가지고 질질 끌자는 생각이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 스스로도 이것은 정부개혁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해양수산부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孫泰仁委員**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해수부하고 지자체간에 논의된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특별법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면 지금 특별법은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골격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저한테 한 부 좀 주실 수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데 바로 어제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보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아무리 위원님께서만 관계부처와 조율되지 않은 법안의 초안을 우리가 내놓기에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왜 제가 장관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만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의원입법이라도 하려고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데 신뢰의 문제인데 저는 부산의 언론이나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민감하신 것 같아요. 당해 장관이 이것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내놓은 과제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공식적 협의가 아니고 실무적으로 의견을 타진해 본 수준의 무슨 이야기가 나갔는지 장관도 모르는 것을 어쨌든 먼저 듣고 부산에서는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지고 제가 부산에 가 가지고 TV 앞에 나가서 이것이 아니라고 또 해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장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부산시민들이 시비 걸거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孫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 허튼 소리 안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면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가 될 수 없는 조건…….

○孫泰仁委員 그러면 4월 임시국회에는 이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가능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孫泰仁委員 그래야만 6월까지 설립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일용 그렇습니다. 우리 부도 답답해서 골자에 대한 협의 전에 지금 법안부터 먼저 만들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아니, 굳이 그것을…… 실무선이 어느 선인지, 과장선인지 모르지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꼭 필요합니다. 실무자들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행정행위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孫泰仁委員 다음에 제가 물동량 예측부분에 관해서 꼭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99년도 물동량 예측량이라든가 그동안의 관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해수부에서 물동량 예측을 지금 KMI에 의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이 KMI가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이 물동량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는 것은 이미 해수부에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항만기본정책이고 항만투자계획이고 다 여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인데 물동량 예측이 주먹구구식이고 그야말로 인위적인 어떤 편성, 산술적인 계산…….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孫泰仁委員 “10년 후에는 3,000만TEU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동량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KMI의 담당 연구원에게 이 문제에 대해 孫 위원님과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았더니 지금 물동량의 증가라는 것은 대체로 경제성장률의 1.6배로 파악되어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KMI에서

합부로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서 KDI의 성장률 예측치를 가지고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앞으로 연구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겠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국내 물동량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에만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양이나 부산의 물동량 예측은 국내 경제상황에 따른 물동량의 변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지역의 경제성장률에 따른 또 다른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변수를 다 종합한 기법이 나와 있지 않았고 공무원들이 그 변수를 가지고 대강 계산해 놓은 것이 3,000만 TEU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서 새로운 변수들을 고려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용역이라는 것이 반 년,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저도 위원님들께 재촉을 받았듯이 계획을 세우겠다 해놓고 이것이 몇 달가도 그냥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선 공무원들이 예측해 가지고 계획을 한편 세워 나가면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거쳐 나가고 있습니다. 고쳐 나가겠습니다.

○孫泰仁委員 바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항만개발에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화물이 부산항에 56%, 광양항에 52% 환적이 되어 들어가는 데 상해가 개발이 되었다 할 경우에는 이 환적화물의 변동폭이 상당히 심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고베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주변항의 추세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외국 전문기관을 통해서 세계 물동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孫 위원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어떤 학자에 의하면 6, 7년 후의 물동량 그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고서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차질 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항만투자,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교통세 예산배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13% 확보로…….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한쪽에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교통세 폐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그러니까 폐지는 다음해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래서 지금 우리 항만국에서는 정부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 매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孫泰仁委員** 하여간 盧 장관께서 계시면서, 오래 장관직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孫泰仁委員** 이것에 대해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장관들을 어떻게 설득하시든간에 전부 다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항만시설 투자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국회에서 아무리 아우성 쳐봐야…….

그리고 민자로 해도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별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자본 유치나 아니면 PA가 설립되면 공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국가재정 투자부분이 어느 정도 확고하게 일정비율을 차지해야 해수부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올해 내로 기반 조성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琥委員** 朴容琥 위원입니다.

항만에 대한 얘기를 부산과 광양쪽에서 계속 하셨는데 저도 인천항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항은 유서 깊은 대단한 항인데 지금 양쪽에 치여서 소외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북항 개발사업은 갑문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원목이라든가 고철 이런 공해성 화물을 전이처리하기 위해 민자 6,142억원을 포함하여 8,139억원을 투입하여 총 18선석의 신항만을 개발하는 사업

인데 97년5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나 고철부두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없어서 북항 개발이 담보상태를 지금 먼치 못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99년6월 민자유치가 부진한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 사업을 선정해서 재정투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에서 인천북항에 비해서 떨어지는 다른 신항 개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목재부두 기본설계비 6억 2,900만원조차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은 서울에 가려서 시민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합니다. 지지부진한 인천항 개발이라든가 대우자동차 문제 등등 해서 한 260만 되는 인천 시민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천항은 전국 하역능력의 13.6%를 차지하고 전국 물동량의 14%를 차지하는 제2의 항만입니다. 또 인천항은 잘 아시다시피 중국화물이 연평균 24.7%씩 증가하고 또 대북방 교역의 중심항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지만 전국 항만 중에서 체선율과 이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가장 큰 후진 항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천북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남항의 체선·체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과 싱가포르의 PSA사가 40 대 60으로 공동으로 투자해서 4만t급 3선석 컨테이너부두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인천남항의 컨테이너부두 건설은 외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첫 항만사업이라는 데 의미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남항 컨테이너부두 건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중어업협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고 저도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지역적인 말씀이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3월에 개항이 되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인해서 강화지역 어장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피해가 없을 것이 다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엄청난 피해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고속도로가 나면서 물길을 막 았기 때문에 유속이 달라지고 물길이 달라졌습니 다. 그래서 관내 어장의 생태계가 변화되고 또 수 질오염이 악화되고 부유물질의 증가로 인해서 생 산량이 아주 감소했습니다. 또 토사가 밀려들어서 그 좋은 갯벌이 지금은 아주 알아지고 모래로 차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꼬막이라든가 대하 라든가 바지락, 낙지, 갯지렁이…… 일본 수출에 있어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했던 갯지렁이가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연구소에 의하면 강화지역 4개 어촌계에 대 한 용역조사를 실시해서 5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 온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어획량 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많 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은 이자조차 납 입하지 못하는 어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선금 금이라도 지불해야 한다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큼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권을 가 지고 있지만 어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해양수산 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여 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건설교 통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경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국감에서 해경 청사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위원들께서 대전으로의 이전은 불가 하다 부적합하다고 그래서 인천지역에서의 신축을 추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불용처리한다는 조건으 로 배정했던 것을 아마 새로 오신 李奎植 청장께서 잘 알고 계실텐데 청장께서는 전 청장에게 인 수인계를 잘 받으셨나요?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예.

○**朴容琬委員** 그렇다면 청장 취임 후에 신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그 이후에 인천 연구구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전과 인천 둘 다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한 전제로서 추진해 놓은 것 입니다.

○**朴容琬委員** 언제 건축허가신청을 하셨습니까?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이 지난 연말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12월27일 허가를 받아놓았습니다.

○**朴容琬委員** 그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난 1 월5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그 전에 해 놓아야 가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朴容琬委員**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절차적 인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고…….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그것은 나중에 수주업체 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할 필요 는 없습니다.

○**朴容琬委員**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진행이 착착 되고 있다는 거지요?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容琬委員** 어찌됐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인천에 청사가 잘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 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구요.

그런데 청장님, 지난 1월17일 인천 대청도 해상 에서 인천 백령도간을 운항하는 데모크라시 2호에 서 화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해군과 해경의 신속한 구조로 인명피해도 없이 잘 구조가 되었는데 참 한심한 것은 1월17일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1월8일날 선박안전검사를 해서 34개 항목 에서 모두 다 양호하다고 나타났어요. 하나도 불량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해경의 안전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제2, 제3의 해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앞으로 해경이 하실 일이 참 많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어선이 연근해에 와서 불법어로를 할텐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 어 또 불법어선을 잡는 이런 큰 업무를 갖고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許泰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泰烈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21세기는 우리 한국이 동북아 물류의 아주 중추 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 도 지적을 하고 또 정부요로도 상당히 인식의 범 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해수부가 이번에 항만투자 확충계획을 아주 야심적으로 세워서 대통령께 보

고를 드리고 또 발표한 것을 보고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盧 장관께서 아주 노고가 많다는 이야기도 제가 한 말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야심찬 계획이 장관님과 해수부 차원의 하나의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한갓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예산당국의 인식과 평가, 여기에 대한 합의의 이것이 꼭 빠른 시일내에 확립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 계획 이상의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만투자 수정계획을 죽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록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존경하는 鄭哲基 위원님 안내를 받아서 지난 주말에 광양항 부두건설 계획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감명 깊게 우리 전 농해수 위원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왔는데 광양항을 당초 24선석에서 33선석으로 늘리고 연간 처리물량도 932만TEU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산신항도 25선석을 30선석으로 늘리고 연간 810만TEU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종전에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확충시설 투자계획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순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설규모도 그렇고 연간처리용량도 그렇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부산항은 기존 16선석이 있습니다.

○**許泰烈委員** 물론 그것은 알지요. 100년 들어서 만든 항구가 있지요. 있는데 여태까지 계획은 신항이 항상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계획에 아주 역전이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제가 죽 들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孫泰仁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확충의 기본 백데이터가 이 물동량의 증가추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부산항은 2020년까지 6.03%정도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광양항은 12.75%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또 들어보니까 2011년은 부산신항이 계획된 25선석이 전부다 완공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810만TEU를 2011년이면 처리하는 신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산신항의 물동량 증가 총 처리용량을 얼마로 잡아 놓았느냐 하면 1,400만개를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새로 생긴 부산신항이 810만개를 처리하니까 1,400만개에서 810만개를 빼면 590만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부산항구 처리물량입니까? 작년에 754만개를 처리했는데 그로부터 11년이 지났는데 부산 구항이 590만개만 처리한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산출이…….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장래의 계획이라는 것은 100%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요컨대 부산의 구항은 중앙부두라든지 이런 데서도 컨테이너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또 부산시민들은 그곳을 워터프런트라고 해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또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물동량의 처리를 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 항만의 부분은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선택의 융통성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許泰烈委員** 그 다음에 우리가 가까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10년, 20년 이것은 사실 孫 위원 지적대로 가변성이 많으니까 광양항이 99년도에 컨테이너 41만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했느냐 하니까 64만 2,000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 정부가 책정한 컨테이너 처리목표가 70만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항비도 감면해주고 광양항의 컨테이너선을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한 목표량을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4만개를 처리했는데 금년에 목표 추정치를 얼마로 잡고 있느냐 하면 186만개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갑자기 1년 사이에 세 배를 처리합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2단계 4선석을 완공해서 열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許泰烈委員**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을 하면 또 광양항과 부산항의 지역주의 이 소리 나오고, 참 저도 鄭哲基 위원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온갖 것 저는 다 하고 싶은데 지난번 또 광양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현장도 보고 참 친절하게 안내도 받았습니까마는 이해가 잘 안 돼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2001년에 신부두가 개장이 됩니다.

○**許泰烈委員** 되는데 금년에도 온갖 지원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성공 못 했는데, 70만개 목표인데 64만개 밖에 처리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 사이에 세 배가 증가될 수 있습니까?

금년이라고 해 보았자 벌써 2월 다 갔고 개장해봤자 금년 하반기 연말이 될텐데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 그 수치의 정확성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설명드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변화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광양의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지금은 운영자 입찰에 경쟁을 붙일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큰 실수만 하지 않고 잘 끌고 가면 경쟁까지도 붙일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고 그 경쟁자들이 그저 소소한 선사나 운영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대선사들이 경쟁을 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변화 같은 것이 있으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許泰烈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KMI에서 추정한 2020년도 총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을 5,000만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신항까지 다 앞서치고 해 본들 2,500만개 아니겠습니까? 그럼 2,500만개가 광양이든 어디든 대한민국 항구에서 처리가 되어야지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광양항이 개발되는 것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이 명칭이 무슨 포트든 그 명칭 자체는 거부반응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화물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에서 처리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광양항이 기존 메인항로에 있고 여러 가지 항구조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광양항이 되는 것을 절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전체적인 물동량 추정치나 또는 현실적으로 당장 금년, 내년 이런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 부산시민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신문 스크랩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장관님이 부산사정을 너무 잘 아시겠지요. 10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의 항구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의 제일의 항만이고 이것이 참 굉장히 긍지와 자존심 여러 가지를 주는데…… 부산 구항은 100년의 역사를 가졌으니까

차치하고 부산 신항과 광양항은 여태까지 그렇게 역전이 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정물동량의 근거가 되는 백데이터를 보니까 납득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항만관계 전문가나 언론이나 도배질을 해댑니다. 광양항을 키우기 위해서 부산항도 25선석 그대로 두면 또 뭘 할 것이니까 한 30석 한 뗏 석 추가시켜주고 광양항은 24선석에서 일약 33선석으로 올리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언론이 아주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許泰烈委員**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정권적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400만 시민이 살고 있고 어느 정도 이론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니 제가 그 지역구 출신으로서 이것을 대변 안 할 방법도 없고 부산신항이 제 지역구에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원에서 얼마 전에 해수부를 비롯해서 항만 예산 집행실태를 감사해서 신문에 보도되고 저희들도 입수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지적한 것이 항만에 대한 투자가 지금 6.9% 아닙니까? 이 정부 들어서 한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계속 하향 추세로 6.9%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항만시설 확보율이 90년대초 하고 같습니다.

수출입 규모는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수출입화물의 99%가 이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데 이것이 지금 90년대초 하고 같다니 이것이 얼마나 동맥경화가 생깁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으로는 향후 10년간의 수출입화물의 체선, 체화 때문에 약 한 5조 4,000억의 간접비용손실이 오고 수입 면에서는 무려 57억불에 달하는 수입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 큰일났다 그러면서 지적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부산신항인데 정부가 지역배려 차원에서 포항에도 집어넣고 목포에도 집어넣고 울산에도 집어넣는 바람에 부산신항은 민자에 맡겨 가지고 물리적으로 벌써 2년이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안에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회사들이 부도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국감 때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건설현장이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발표를 하시면 우리 부산시민

들이 보도도 하고 또 들으실텐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신항이 지금 우여곡절 끝에 2005년에 3선석이라도 개장한다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항구가 건설되면 뭐 합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오는 화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나 철도나 이런 SOC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장관님도 애를 많이 쓰고 저도 나름대로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가락IC, 초정IC 가는 도로확보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 착공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획예산처하고 저하교의 이야기는 금년도에 이것을 지금 현재 건교부 주관의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그냥 두어 가지고는 그 기반도로구간이 굉장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총액 지원도로사업비라는 것이 연간 3,000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의 100여개 되는 도로에 쪼개어 투자하면 투자금액이 워낙 적어서 2005년 개항까지는 도로 완공이 절대 불가능하니까 이것은 신항 배후도로로 지정을 하면 전액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 해수부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하고 서로 양해를 보았는데 이점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노력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금년에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신항 배후철도 건설도 작년에 기본계획의 용역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12월까지의 납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철도청도 여러 가지 적자이고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가덕신항에서 밀양 가는 배후도로 그것도 또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이고 그래서 신항건설도 중요합니까마는 역시 배후도로가 동시에 되어야 개항을 하더라도 투자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委員 민주당의 張誠源 위원입니다.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정부하고 어업협정 협상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사실은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양국간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훗날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도 역시 치밀하게 정교하게 협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대단히 좋은데 제가 이 한·중어업협정안을 보고 느낀 소회는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좀 부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협정문안을 죽 보면 예를 들어서 잠정조치수역을 규정한 7조랄지 과도수역을 규정한 8조랄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제9조 그리고 양해각서 제1항 이런 것들이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특히 국회 안에서도 설득력을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이 보여지고 또 이것이 국민들께는 어떻게 비쳐질지 의문입니다.

제9조를 보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 체약대상자는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의 북단에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부수역에 서해특정금지구역이나 특정해역이 포함됩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양해각서 제1항의 한국측 일부수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같은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여기 제9조에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정금지수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제9조에 넣어 놓고 양해각서를 굳이 만들어 가지고 제1항에 그것을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면 일부수역과 제7조제1항에 지정된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에 지정된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에서는 이것이 중국측 양자강 보호수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직접 담당하는 어업자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세요.

아무라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보세요.

거기에 양자강 보호수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예,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양자강 보호수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서는 양 계약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타방 계약당사자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 서해특정금지구역이나 특정해역에서는 계속 규제가 되어 있고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양자강 구역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것이 상치되지 않아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아닙니다.

협정상에서는 합의가 없는 한 현행대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합의를 위해서 양해각서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양해각서를 보자고요.

양해각서를 별도의 합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해각서 제1항하고 제9조하고 서로 상치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제가 확실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9조에서는 합의가 없는 한 현행대로 그대로 조업을 하고 그 합의를 별도로 예외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양해각서입니다.

○**張誠源委員**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저희들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張誠源委員** 아니, 제9조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중국 배들이 우리 서해특정금지구역, 특정해역에 와서 얼마든지 조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조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래서 별도의 합의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만들어서 조업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이 양해각서하고 협정 제

9조하고 무엇이 우선인가 하면 양해각서보다 협정 제9조가 우선이라고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양해각서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협정 제9조에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설명을 좀 해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제9조상의 일부 구역에서는 협행 조업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구역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요컨대 제9조에 일부구역이라고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 구역에 서해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들어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체 많은 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張誠源委員** 다른 구역도 들어가는데 이 구역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들어갑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협상을 해 가지고 서해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에서는 앞으로 중국 배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협상결과를 보고를 했는데 정작 협정문안 제9조를 보면 여러분들이 설명한 협상결과와는 정반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러니까 제9조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고요. 별도의 합의라는 것이 양해각서를 이야기합니다.

○**張誠源委員** 별도의 합의라는 것이 바로 양해각서로 합의를 한 것이다,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에 대해서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그렇게 양해각서로 처리할 일이 아니라 제9조에 단서를 붙여 가지고 양해각서 제1조에 포함된 사항을 그렇게 넣으면 분명해지는 것 아니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양해각서는 이 어업협정문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별도로 합의해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협정문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협정문안에 직접 표현하기 어려워서…….

○**張誠源委員** 그러면 양해각서도 다 함께 발표가

되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 양해각서에도 특정해역이라든가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양해각서도 다 발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발표가 됩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협정문도 발표가 되고 양해각서도 발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의식해 가지고 협정문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해각서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래서 양해각서상에도…….

○**張誠源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혼선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양해각서상에도 특정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張誠源委員** 왜 그 표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특정금지구역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특정해역도 못합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실제로는 특정해역도 좀 같은 성격의 구역입니다.

○**張誠源委員** 물론 중복이 되지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예.

○**張誠源委員** 중복이 되는데 특정해역은 그래도 이 좌표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예.

○**張誠源委員** 그리고 더군다나 남쪽부분은 북한과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요컨대 이 협정문안이라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장래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수록 좋은 협정문인데 그런 것이 좀 모자라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혼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래서 그 문제는 NLL 인정 문제 때문에…….

○**張誠源委員** 그것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잘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오해랄지 이런 것이 안 생기고 국민들께 설명을 하는데도 참 이번 한·중협정문안은 대단히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런 점이 좀 모자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 추가로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해각서에 넣지 말고 협정문 제9조에 단서로 한 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실제로 협정문안은 가서명된 이후에는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런데 그 가서명된 이후에 많이 지금 수정을 했잖아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張誠源委員** 왜 수정을 많이 했지요. 예를 들어서 양자강 자원보호구역 같은 것도 지금 다 수정을 한 것 아니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협정문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각서상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어업에 관한 법령 이것이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한 것입니다.

○**張誠源委員** 그리고 지금 특히 의견접근이 안 되고 있는 부분, 현행조업유지수역으로 하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현행조업유지수역을 좌표로 해 가지고 어디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왜 못 정했어?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 남쪽의 문제는 한국, 일본, 중국 3개국의 200해리 권원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그때 협정 당시에는 선을 긋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張誠源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정확히 수역을 정할 수가 없네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예, 그렇습니다.

○**張誠源委員**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相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培委員** 먼저 특정금지구역과 특정해역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특정금지구역은 서해안과 동해안 이것은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대마도 옆에 특정금지구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특정해역과 특정금지구역, 특정해역을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특정해역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동해와 서해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금지구역은 우리 EEZ어업법 그

러니까…….

○李相培委員 그 반대지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맞습니다. 특정금지구역이 EEZ어업법에 나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업협정수역도를 가리키며)

○李相培委員 그러면 이 표현이 왜 이렇게 됐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특정금지구역이 더 위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금지구역이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된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아닙니다.

당초에 특정해역이 먼저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구역입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특정해역이 특정금지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李相培委員 그렇다면 특정해역이 중간에 딱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들고 여기 와서 설명해 봐요.

그러니까 빨간 것이 지금 특정금지구역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특정금지구역이고 특정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니까 특정해역 안에 특정금지구역이 있는 것이지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완전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특정해역은 좀 범위가 넓고요. 특정해역은 이것입니다.

○李相培委員 특정해역을 지적해 봐요. 금을 그어 봐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여기까지입니다. 특정금지구역은 더 위로 올라갑니다.

○李相培委員 동해안은 그렇고…….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특정해역이 밑에까지입니다.

○李相培委員 금지구역을 포함하지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금지구역이 포함됩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특정금지구역이 이쪽에 한·일 중간수역까지 나왔는데 색깔이 잘못 됐어요. 오

른쪽에 한 칸 더 칠해야 돼요.

그러면 한·일 중간수역에서 특정금지구역을 제외하는 것입니까? 일본이 같이 공동…….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특정해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우리 어선에 대한 조업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금지수역은 외국 어선에 대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EEZ어업법에…….

○李相培委員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특정금지구역 오른쪽까지 나와 있다가! 저기 색깔이 안 칠해져 있어요.

한 칸 더 나와 있다가……. 그러면 그것이 일본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일본하고 어떻게 돼요? 알지도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하지 말고 아는 사람이 딱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국회의원도 설득 못하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나…….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그 부분은 일본 어선에 대해서 특정어선 구역이라고 일본측에는 밝혔습니다.

○李相培委員 밝히면 그것은 한·일중간수역에서 제외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제외는 안 되어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일본이 거기 고기 잡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저희들이 국내법보다 국제협정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중간수역에서…….

○李相培委員 국제협정이 국내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정도 국내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우선해요? 동일해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동일하게 생각할 때는…….

○李相培委員 그러면 좋아요. 그것을 얘기를 해봐요. 특정금지구역이 한·일중간수역까지 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일본어선들은 한·일중간수역에서 자유롭게 조업을 합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특정금지구역에도 와서 조업을 한다 이 말입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금지구역이면 외국인한테 적용이 안 되네요. 색깔이 잘못 칠해져 있는 데는 이 중으로 칠해야 돼요. 빨간 것이 오른쪽 한 칸 가야 돼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우리 협정하고 국내법하고 동등한 효력을 갖지만 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합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일본은 특정금지구역은 아니라 이것입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도를 짚으며)

여기는 지켜야 됩니다.

여기는 안 지켜도 됩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해경에서는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면 연구를 해 가지고 장관님께 보고를 드리고 답을 가져와요.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지 말라고요. 우리 행정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왜 자꾸 우물우물대요?

그러면 대마도 옆의 특정금지구역은 뭘니까? 그것은 군사상 목적도 아니고 뭘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여기는 굉장히 거리가 짧아서 3해리만 영해를 설정하고 국제 통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특정금지지역을 설정하며 조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특정금지구역이 대마도하고 부산하고 중간에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한국 영해에만 특정금지구역이 있고 대마도 쪽에는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요?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아닙니다. 우리 쪽에만 그은 것은 아닙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대마도 쪽으로도 똑같이 나갑니까?

○海洋水産部漁業資源局長 朴德培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업을 금지시킨 것이 배타적경제수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왜 묻는가 하면 남북간에 군사적 목적으로 특정금지구역이 설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되어 대치하고 있는 나라 사이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 어선이 들어갈 틈이 없지요. 중국어선도 거기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오면 쏜다고 하면 그만이지. 정전 상태지만 준 교전지역이지요. 거기 중국어선이 왜 들어오겠어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중국어선들이 우리 EEZ 어업법 제정 전에 그쪽에 와서 조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상으로 서로 위협한 상태까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특정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조업을 못하도록…….

○李相培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필요하고 두 번째로 상대국 어선들의 안전상 필요한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렇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이 특정금지구역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양자강 유역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동일한 시점에 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李相培委員 아니 이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번 한·중어업협정안에서도 양자강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점에서 서로 양보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니까 두 개가 흥정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런데 우리는 특정금지구역은 우리의 군사상이지만 우리의 국익과 상대국 어선의 안전, 두 가지 목적인데 양자강 유역은 저 넓은 지역을 단순하게 중국의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중국 국익에만 이득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얻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금지구역하고 양자강 유역하고를 똑같은 선상에 놓고 서로 주고받았다, 양보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李相培委員 판단이 다 똑같지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것이 고차원적인 해양수산부적 판단, 盧 장관식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의 상식선의 판단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똑같이 이것 주고 이것 받고 그렇게 교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相培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특정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양자강하고 그렇게 바꾸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리고 대마도 옆에는 차관보가 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누가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동해안 어민들이 지금 우리는 어장을 한·일어업협정으로 동쪽에서 잃어, 한·중어업협정으로 서남쪽에서 다 잃어, 그러면 동쪽에서 잃고 서쪽에서 잃은 어장을 북쪽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뜻에서 이것 한 2마일만 어로한계선 북쪽으로 더 올려달라고 통사정하는데 그것은 남방한계선 남쪽에서 우리가 올려주도록 군인들이 조금 수고만 더 하면 돼요. 해경에서 조금 수고만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2마일만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올렸어요. 올려서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도 38도 33분을 2마일 올려서 35분까지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해주렵니까?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李相培委員** 아니, 북쪽 선박이 남쪽으로 넘어와도 쏘지 말고 놔두어라, 돌아갈 때까지 놔둬라 하는 관인데 우리는 우리 군인들이 보호하는 땅에 가서 고기 좀 잡으면 어때요? 2마일 올라가도 그 위에 또 여유가 있다고 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래서 저희들도 해군, 해경, 국방부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글썄, 가만있지 말고 그것을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동쪽, 서쪽에서 뺏긴 어장 북쪽에서 찾아달라 이 말이에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그 다음에 아까 대마도 3해리 그 문제는 지금 그쪽은 영해가 3해리로 되어 있습니다. 3해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쪽하고…….

○**李相培委員** 아니 그러면 일본 쪽에도 그런 뭐가 있어야지 왜 우리나라만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은 대마도 바깥에 3해리 다 줄 그어놓고 자기들은 그런 것 없고 우리만 조심하라는 거예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제가 보기에 저 지도에 우리가 일본 쪽이 뭘 정해왔는지 안 정해왔는지를 표현을 안 한 것이고…….

○**李相培委員** 일본이 안 정했으면 우리도 정하지 말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일본도 정해져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표시를 해야지요.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일본도 특정금지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張誠源 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어업협정,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도 사무관이나 서기관 가운데에서 전문가가 얼마나 여기에 참여했는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2월중으로 이것을 비준을 해야 된다 이리저리 말고 연구를 좀 합시다.

그 다음에 한·일어업협정 결과에 따라서 어선감척을 1,072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어선감척을 398척 하려고 예산을 다 세워놨잖아요? 그러면 전부 이렇게 감척만 다 해버리면 우리 어민들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척했는데 이것이 감척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못쓰는 배를 다시 또 사 가지고 다시 조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뭔가 좀…….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하나 하나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하나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려면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李相培委員** 장관이 보시기에는 하나 하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 복잡하고 어렵고…… 가볍게 다루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그 한 사람 국민이나 조합의 어민들은 전체 아닙니까? 전부니까 그분들을…….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한 사람을 가볍게 본 일이 없습니다.

○**李相培委員** 그러면 왜 하나 하나 따지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아니, 정책 하나 하나에 선박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그 다음에 선박을 살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자격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李相培委員**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감독권 한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선을 1,470척이나 감척을 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민들이 감척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감척을 안 하고 싶으면 강제로 감척하는 방법은 없고 어민들이 감척을 원할 때만 하는 것입니다.

○**李相培委員** 그런데 지금 한·일어업협정 결과에 따른 이것은…….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것은 전부 다 원해서

한 것입니다.

○李相培委員 거의 다 했잖아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어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희망하지 않은 감척은 없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正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正彦委員 민주당 소속 張正彦 위원입니다.

먼저 해외신어장 개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일, 한·중어업협정으로 국내의 많은 어장이 축소되어서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부터 해외신어장 개척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어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큰 방향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결과는 신어장 개척은 캄보디아인가 한 군데하고 어선 1척, 이런 정도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어장개척 관계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 사업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전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신어장 개척사업을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관심을 안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더욱 어장이 축소되고 또 신어장개척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올해 신어장개척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 어업구조조정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의 어장축소로 감척어선 수는 근해어선이 885척, 연안어선이 397척입니다. 그러나 일반감척 지원금은 실수령 보조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별감척지원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감척지원금 산출도 적용기준과 산출기준이 지역별로 업종, 선령 등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 해소방안이 필요합니다. 장관께서는 감척지원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李相培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척된 어선이 헐값에 되팔려지고 다시 조업에 나서는 등 이런 형태는 막대한 정부예산이, 국고가 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예방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어촌·어항·어족자원의 관광자원화로 해서 어촌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규모 어촌·어항을 레저, 휴식, 관광의 다기능 공간으로 개발하고 바다목장, 마을어장 등을 체험 생태형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어려운 어촌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참으로 저는 전적으로 실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어촌을 활기차게 해주어야 합니다. 기가 죽어 있는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전국의 우리 어촌, 어족자원을 이용한 이것은 청사진을 만들어서 우리 어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폭설피해 등 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해서 폭풍·폭설, 이로 인한 어선과 수산물 양식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러나 수산재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각각 이원화되어 있어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산재해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 검역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 주문을 합니다. 납땜계, 복어 사건으로 인해서 수산물 검역강화 및 예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예산 및 장비, 인원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예산과 올 예산을 비교했을 때 기껏 4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쳐 있습니다. 또한 인원도 증원하고 장비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산물 검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예산 및 인원, 장비가 보충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에 계획으로 남북교역 지원을 위한 남북 해운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남북교역에 대해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해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후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이 강

구되고 있고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비슷한 인접지역을 비교해 볼 때 남북간 운항비가 2배 내지 3배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선박이 입·출항할 때 부과하는 접안세·입항세 등 총비용이 북한은 8,500달러 내지 1만달러로 4,000 내지 5,000달러 수준인 중국의 2배, 러시아의 4배 내지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입·출항 비용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물류비 절감과 다양한 직접 수송체계 확보, 북한의 운항비 인하, 북한 및 중국 등 세관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상범죄를 대비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해상을 통해서 밀입국이 증가되고 있고 어족자원의 불법남획과 해상 강·절도 등 해상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입국은 작년 1월의 경우 1건 78명인데 비해서 올해는 2건 124명으로 늘었고 해상범죄도 작년 1월 778건에서 올해 1월에는 1,012건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경의 밀입국 및 수사담당 직원 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과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비교했지만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 밀입국 및 해상범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올해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더한층 해상안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의 경우 한·일 EEZ수역에서 조업하다가 나포된 우리 어선이 일본어선보다 8배나 많았습니다. 향후 중국과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중국어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도에 공동으로 조업하는 곳에서는 우리 어선과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한 어민들의 교육 및 관리, 감독이 철저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제주 지역의 헬기도 입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신임 청장께서 어

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주해양의 특수한 사항을 감안해서 반영키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신임 청장께서도 알겠지만 해가 갈수록 제주지역의 해양안보가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도 103억 5,000만원의 헬기구입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기의 배정에 대한 신임 청장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熺太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熺太委員** 朴熺太 위원입니다.

해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중어업협정은 이것이 완성된 협정이 아니라 미완성의 협정입니다. 이것은 협정을 서로 맺기 위해서 논의를 하다가 완성이 안 되고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지금 가져와 가지고, 끝이 안 난 상태에서 일부만 가서명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국회에다가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성을 시켜와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張誠源 위원께서도 다 물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부분이 완전히 블랭크상태로, 백지상태로 지금 협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줍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관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정수역, 과도수역 이것은 구역과 범위가 확정되어 가지고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정으로서 완벽하다고 할까, 완성되었다고 보는데 현행조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 수역은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정이 안 된 수역을 가지고 와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협정이다 이렇게 내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결정하겠습니다 또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합의가 되어 있으면 된 상태에서 협정을 맺어와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완성협정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국익에도 중대한 침해가 있을 우려가 있고 더욱이나 우리 수산업계에서는 이것이 큰 타격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난번에 한·일어업협정 뒤에 협정이 완전히 못해 가지고 많은 논란과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중어업협정도 지금 적어도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구역에 관한 그 구역이 특정되지 않은 협정은 국회에서 지금 비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조업유지수역에 대한 위치결정 부분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미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또 이렇게 협정의 내용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협정 자체가 예를 들면 그 위치부분이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입어척수라든지 어획고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또한 입어협상에 맡겨져 있게 되어 있고 입어교섭이 끝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타결되더라도 또한 세부입어절차에 대해서 또 다른 교섭이 끊임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테두리를 정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명확하면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불분명한 그런 국제협약도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어느 협정이라고 들고나올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협정이라는 것은 기초가 만들어지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말하자면 이후 관계발전의 토대로 삼을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朴煥太委員** 누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비준의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朴煥太委員** 비준의 대상이 안 되지요. 협정이라는 것은 현안문제에 관해서 한·중 양국간에 일단의 분쟁이라 할까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해결적 능력이 있어야지 이것은 오히려 분쟁이나 아직까지의 의견불일치를 해소하지 못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협정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이것은

완전한 협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합의된 분야에만 협정이고 합의 안 된 분야가 또 중요하고 아주 크고 여기에 우리 어선들의 조업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해 와야 되고 그럼 안 한다면 이것은 1차 협정이고 다음에는 2차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겠습니다라든지 정부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난번 회의 때 외무부 관계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음에는 설령 무슨 협상을 하더라도,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을 성질이 못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협정으로서 이번이 마지막 협정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좀더 연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朴煥太委員**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도대체 지금 골격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4개 수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도, 잠정, 전관 그 다음 배타적 수역 그 다음에 이제 현행조업이 유지되는 구역 그런데 이 한 가지 마지막 이 구역은 수차 이야기했지만 범위가 획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었으면 그것도 해 가지고 와서 국회동의 요청을 하겠다든지 해야지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외교부하고 좀더 협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비준의 대상도 되지 않는 협정에 도장 찍어 와 가지고, 저는 외교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국회에 내놓는 수준의 외교부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朴煥太委員** 우리나라 외교부 수준이 마늘협상하는 것을 보니 중국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어렵도 없는 저자세로 중국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그런 협상을 해서 왔습니다. 장관께서는 얼마나 신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믿을 것이 못됩니다.

중국이 WTO협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그런 무역보복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복조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취한 조치, 우리가 WTO협정상 합법적인 관세인상조치를 했는데도 그것을 양보하는 협상을 마무리짓고 온 데가 우리 외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 한 가지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한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많은 재판에 관여해 보고 많은 화해를 권고했는데 화해라든지 어떤 분쟁을 종결시킬 때에는 반드시 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황과 여러 가지 다른 이해관계를 총 고려해 가지고 법규정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만한 타협을 합니다.

○**朴煥太委員**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좀 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해놓으시고…….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朴煥太委員** 바다문제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변호사문제는 나중에 사석에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에 하는 해양EXPO 그 기본계획이 지금 거의 수립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내용을 좀 알려줄 수 없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추상적인, 원론적인 수준의조감도 형태입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朴煥太委員** 주시고 또 그것이 지금 물론 주된 도시는 여수입니다마는 여수가 아시다시피 광양만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만 전체가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인근지역에 대한 배려와 거기의 발전방안도 거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관광벨트로 되면 결국은 연결이 될 것입니다마는 주변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도 같이 계획을 좀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소형기선저인망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년,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개념을 내놓았습니까마는 전부 연관되는 것이고요.

당장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매수한다든지 또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를 금방 만든다는 것이 어려워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朴煥太委員** 지난 정권에서 아시다시피 정책을 하나 내놓았습니까마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저리로 용자해 주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리도 못되지만 그런 방법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고데구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장관께서 좀 참신하고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토론을 하다가 지금 덮어두었습니다.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덮어두었습니다.

○**朴煥太委員** 그 덮어둔 것을 국회에 가지고 와서 토론도 하게 뚜껑을 열어 보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잘못하면 꾸중을 많이 들을 수도 있는 것이라서 조금 다듬어 갖고 위원님 눈치 좀 보고 내겠습니다.

○**朴煥太委員** 장관께서야 거인인데 꾸중 좀 들은들 눈이나 꿈쩍하겠습니까?

그러시고 해경청장, 이번에 아주 경륜이 깊으시고 많은 능력을 가지신 청장이 오셔서 아주 정말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질서가 정말 이제 든든한 반석위에 올라간 것 같아서 마음이 든든한데요.

지난번 청장 오시기 전에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선박 출입항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제도를 지금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안보상황이 아주 안 좋고 또 밀수의 위험도 있고 이런 시기에 그냥 모든 선박이 출항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안보상황이 변했고 그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박의 t수에도 관계없이 모든 선박을 다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틀렸고 또 바로 이웃 마을에 간

다든지 또 섬의 경우에는 매일 몇 번씩 배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장에 나가는 사람은 하루에 두 번씩 배를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선통제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행의 자유가, 내륙에는 수백km를 가든지 어디든지 신고도 안 하고 다니는데 바다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 배 조금 타고 가는 데도 전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 어떻게 됩니까?

배타는 것이 일상 생활화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규제를 좀 풀어 주세요. 그것이 정말 국민들의 불편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해경청장님께서서는 다양한 경력과 주요 지휘관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해경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으시지요?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예.

○鄭長善委員 제가 볼 때 앞으로 해경의 역할이 중요하고 독자적인 작전을 많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해경에 경험 있는 분들이 지휘관으로 앞으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군에만 근무했던 사람이 해군중수가 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해경의 역사가 오래 되지 않고 또 경찰에서 인사할 때 보통 3배수 또는 5배수의 경쟁자 가운데에서 우수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것이 합리적인 인사제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앞으로 이 부분의 문제점을 극복해 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鄭長善委員 지금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이번에 한·중어업협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3,100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중국의 불법어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시켰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합니

다.

지금 보면 이 몫은 철저히 해경한테 가 있습니다. 앞으로 해경이 작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몫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이것이 고스란히 그냥 숫자로만 되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반도와 해역 전체가 우리 해경의 작전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예.

○鄭長善委員 여기에 따라서 3,100억원의 이득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손실로 가느냐, 저는 중대한 해경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신항만 투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 2공구 공사가 신공법인 SCP공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의 공정을 보이며 2000년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12월 사석과 SCP상부면의 접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석이 SCP상부면에서 약 1m 이상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만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長善委員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면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1m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원인은 SCP공법이 시공비가 저렴한 장점은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에서 도입한 신공법이기 때문에 공사경험이 없고 장비를 일본에서 빌려주지 않아서 자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설계를 변경했을 때 공사비는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문제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행 조업유지수역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확정을 짓고 어업협정을 우리 국회에서 비준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상태

에서 비준해 주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시다마는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전체적인 일정은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시다.

○**鄭長善委員**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왜냐하면 이번 국회 중에 그 비준조건을 갖추도록 협상이 끝날 가능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마무리 짓고 하려면 다음 국회가 열리도록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발효기간이 좀 늦어지는 그런…….

○**鄭長善委員** 그러니까 지금 비준해 주는 것과 나중에 이것이 다 합의된 뒤에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모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鄭長善委員** 그 다음에 항만건설 사업에 대해서 투자재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자료에 보면 2011년까지 총 37조원으로 늘어났습시다. 재정투자소요가 21조로 늘어났고 외자 등 민간자본유치 소요가 한 11조 그 다음에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5조 이렇게 늘어났습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최근에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동량의 증가 그 다음에 일본 고베항의 기능저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금년도 항만관련예산은 1조 2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 2조 가까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자사업 추진재원이 약 42%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로 만들지 않습니까? 항만공사를 만들고 있어서 컨부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데 5조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그냥 서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만사용료 현실화 문제입니다.

96년도에 5%를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보

면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가 약 1,720억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약 853억원을 징수해서 항만건설비용의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사용료가 대부분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낮습시다. 그래서 이런 저렴한 가격이 우리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항만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문제하고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정한 항만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한 투자재원 원가 그 다음에 투자재원의 확보 그 다음에 수출화물의 경쟁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한에서 수산성대변인이 1월13일 담화를 통해서 금강산에서 열기로 합의한 어업실무자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남측에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 수산협력이 국내 어업인 피해와 신변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이 남북 어업협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도 해운협정을 곧 맺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한성선박 입항이 지금 북한에 의해서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세스호가 통일부로부터 항만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운항허가를 취소 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삼성전자나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이 지금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항만사용료가 굉장히 비싼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간 해상운송을 연안교역으로 취급해서 상호간에 최혜국 및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직접교신 및 조난선박에 대한 공동구난 및 구조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시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있고 사실 정부가 다음 달에 이 문제를 확정 짓겠다고 했지만 보도에 따르면 거의 이제는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해경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밀입국 문제가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최근에 검거실적을 보면 해양경찰청은 1,544명 그 다음에 경찰청은 1,172명으로 수치가 서로 틀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 공조부분에 대해서 실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龍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學委員** 金龍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광양항 민자유치 입찰 특혜의혹’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민자유치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작업 관련해서 13일 우선협상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민자유치설명회 여기에서 좀 난리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이미 작년 4월에 해수부하고 공단이 호주 P&O Ports사하고 광양항의 배타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는 작년 10월 광양항의 사업성 분석을 마치고 입찰까지 준비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보철강이라든지 대우자동차 매각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나라 망신을 시키고 경제적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결국 나라 망신을 시킨 꼴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업체들도 많이 왔다가 이런 모양을 보고 나서는 국제적 입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사업의 투명성이 상실되고 국가의 신뢰가 먹칠 당하는 이런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 두 차례 유찰이 되어 가지고 P&O Ports사하고 양해각서를 맺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양해각서에 근거해 가지고서 사업성 분석까지 마쳤다면 누가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로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경청장에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해경청사 신축공사는 시작이 됩니까?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아직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金龍學委員** 금년 안의 시작여부도 말씀하실 수 없어요?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예.

○**金龍學委員**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지요.

이 청사가 대전직할시에 신축될 수도 있습니까?

○**海洋警察廳長 李珪植**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金龍學委員** 우리 朴容璜 위원님이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鄭長善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새만금사업 속행여부가 곧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좀 아껴두었던 질의인데 먼저 하셨네요.

사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해서 우리 해수부장관께서는 분명한 견해를 좀 밝혀 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마 해수부 견해가 국무총리실로 전달됐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견해를 제출하셨는지 주로 새만금 갯벌에 관한 얘기겠지요. 어떤 견해를 제출하셨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선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통계를 보면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사이에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선원수가 줄었습니다.

90년도에는 10만 5,000명이 99년도에는 5만 9,000명으로 아주 형편없이 줄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우리 해수부에서는, 그 전에 해수부 발족 이전에는 다른 관청이었겠습니까마는 선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이 거의 전무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해수부 뿐만이 아니라 그 전신기관에서도 이런 선원확보를 위한,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있다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보유선복량 판단하고 연계해서 적정한 선원수는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고용중인 외국의 선원수가 몇 명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선원공급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의 남북한 어업협력 문제가 나오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 잡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다른 어장을 할애해 주는 서로 교환식의 양보방법도 거론이 되는데 실제 그런 것이 거론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이 그냥 실무선에서 가능성만 타진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해안에서 만일 남북한 어업협력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의 역할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혹시 중앙정부가 아닌 북강원도하고 직접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진선 강원도 지사가 그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수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해서 판단하신 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협정과정에서 질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朴燾太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역시 문제는 네 가지 수역 중에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이 이 협정안에는 좌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난 회의 때는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위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위임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수역’이라는 말로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잠정조치수역이라든가 과도수역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이루어진 세부적인 일들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수역에 관해서도 ‘현행 어업활동을 유지하며……’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좌표만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위임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일부수역을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수부장관의 견해가 어떤지 밝혀 주시고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좀더 완벽하게 하려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어떨까? 현행 조업유지수역에 관해서는 좌표결정 전까지는 현재의 조업유지수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든가 이런 식의 잠정적인 규정이 들어가 주었다면 사실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거든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부수역’, 이 4자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한·일어업협정에서 한번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오죽 잘했을까 이렇게 믿지 마시고…… 외무부 믿었다가 특히 해외 협정이나 조약 같은데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13조에 한·중어업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행조업유지수역에 관해서 논의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혹시 나중에 답변하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哲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鄭哲基입니다.

우선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에 어업관측센터나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관측을 예측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업과 관련된 조사나 관측은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哲基委員 어느 정도까지 그 역할이 되어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한 200여 군데 바다오염도를 매달 조사한다든지 그밖에 조류의 이동이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즉시 예보한다든지 고기…….

○鄭哲基委員 알겠습니다. 그런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진청 산하에는 농업관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각 품종별로 재배면적, 생육상태, 시장상황, 해외농산물수입전망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가격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관측치에 비해서 상당히 초보적이기는 합니다만 전세계가 WTO 체제하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농업관측사업이라는 것은 가격형성이랄지 재배랄지 이런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분야에도 어업관측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

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장관의 견해를 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양식어민들도 시장가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과대생산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없어서 폭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광어가 500g 한 마리에 1만 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11월에는 갑자기 8,0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것은 전혀 관측업무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가, 농업분야와 더불어서 어업분야도 어업관측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아니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입물량도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래서 각국에 KOTRA도 있고 정보를 얻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통신도 발달되어 있고 분석하는 기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노하우를 축적해 가면 우리 어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몇 가지 실효성 문제에 관해서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鄭哲基委員** 다음으로 아까 許泰烈 위원 또 鄭長善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9월에 있었던 감사원 감사가 해양수산부와 7개 기관에 대해서 항만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총 41건의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항만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 동안의 수출입화물의 체선·체화 등으로 약 5조 4,000억원, 아까 許泰烈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회간접비용이 발생되고 또 54억 2,700여달러의 환적화물 처리에 따르는 수입 확보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이런 심각한 항만상황을 고려해서 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향후 10년간 소요재원으로 총 37조원 수준인데 이중에 재정투자를 21조, 약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재정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 정부 재정예산 형편으로 당장 내년도부터

라도 2조원에 달하는 항만투자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만 세워놓고 또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말 것인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鄭長善 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지만 항만에 관한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방안이 확실히 서있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나 또는 위원들이 나서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자신이 있는지 확실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북항,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항 등에 집중투자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원 보고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이 감사원 보고를 받아 들어서 어떤 새로운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경청장님께,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최근에 선상폭행이 아주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 동포와 우리 선원들간의 폭력행위랄지 또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환까지 겪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선상폭력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善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委員** 2시부터 시작해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장관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좋은 말도 여러 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거의 같은 질의를 듣고 고문에 가깝도록 앉아 계신 것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는 주요 식량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관심이 증가되고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만 해도 100만명이 넘고 연간 15억 달러의 수출로 흑자산업으로는 우리나라 제1차 산업 중에서 유일합니다.

이러한 해양산업이 계속적으로 하향 산업화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우리의 해양수산은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 자원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일부 어민 등은 어업경영보다는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피해와 간척과 매립에 따른 피해에 대한 어업보상과 정부지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등 가장 근본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중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연안지역의 산업폐수와 생활하수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선박들로부터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 그리고 기름 등이 해양을 오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잡는 어업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해양자원 남획 또한 자원고갈을 부추기고 있고 이러한 자원감소는 무척 심각해서 연·근해 어선의 연간 평균 채산성만 보더라도 80년에는 어선 t당 3.6t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2.7t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정부 보상이나 지원 등 겹밥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수산업은 정부지원에 의해서 일으켜져야 된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며 관리체제에서의 허점으로 인하여 제대로 정부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다가 자신들의 생업의 터전이라는 인식 부재로 인해 자손만대에 물려 줄 유산이라는 생각보다는 목전의 이익만을 위해 바다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자원이 없다고 남의 탓만을 하는 그릇된 일부 어민들의 이기주의 또한 문제입니다.

소득과 직결되는 수산물 제값 받기도 유통기반 시설과 정보인프라 취약으로 유통마진이 42.5%에 이르는 등 그 폭이 커 어민들의 의기를 위축시킵니다.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아끼지 않는 집단이기주의가 계속되고 정책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잘못 시행되는 등 해수부에서 내놓는 대안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신뢰를 잃어간다면 우리 수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배를 줄인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배를 늘리고 있으며, 허가를 내주면 포화상태로 바다가 엉망이 되는데도 허가가 양산되는 행정은 어민들을 위한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해양오염과 해양자원 고갈, 어민들의 이기주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장관님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믿고 따르도록 신뢰성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산·인천 항만공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장님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정기국회 때 해양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국정감사 시 인천 해양경찰청 방문 때 또 종료가 다 되어서 종합감사 때까지 여기 계신 스물두 분의 의견 모두가, 모두라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한두 분이 빠졌을지 몰라도 그 속기록을 보면 모든 위원이 해양경찰청 청사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청장한테 다짐도 받았습시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청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또 여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질의를 안 드렸는데 청사이전문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元喆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元喆喜委員 모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기분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徐廷皓 해운물류국장 계세요?

○海洋水産部海運物流局長 徐廷皓 예.

○元喆喜委員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컨테이너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계 3대 항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축하해 마지않는데, 앞으로 동북아 물류기지 문제를 놓고 상해하고 경쟁을 할텐데 앞으로의 전망은 대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海運物流局長 徐廷皓 상해항의 물동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수심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6,000TEU급의 큰 컨테이너 모선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상해항에 52선석 규모의 큰 부두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경쟁력에 있어서 부산항이 상해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元詰喜委員**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해 가지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물론 우리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는지…… 좀 더 국민인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海運物流局長 徐廷皓** 알겠습니다.

○**元詰喜委員** 그 다음에 **姜武賢** 수산정책국장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元詰喜委員**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수협이 공적자금을 1조 2,000억이나 받고 그러한 것 중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수산물 유통구조에 있어서 무리한 직거래를 많이 해 가지고 업장마다 전부 다 결손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거래 종합판매장 이런 것이 금년도 정책으로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서 가지고 직거래를 해 가지고 도대체 수지가 어떻게 나는지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알겠습니다.

○**元詰喜委員** 그리고 하나 건의하는데 지금 성남 시에도 농수산물종합물류센터를 시에서 추진을 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 농협이 계약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럴 적에 수협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물류의 중심점에 수협의 중요한 공판장을 마련해야만 그것이 제대로 정말 직거래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 구색을 갖추지 못하는 장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도록 해본 경험으로다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알겠습니다.

○**元詰喜委員** 그 다음에 수협은 누가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제가 합니다.

○**元詰喜委員** 지금 공적자금을 1조 2,000억이나 넣고도 부실이 9,900억 정도 났는데 지금 예금보험공사하고 협정도 맺었지요?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아직 MOU체결

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될 것입니다.

○**元詰喜委員** 이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헛돈을 들인다고 무척 분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협이 다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경영을 정상화하고 흑자를 낼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예, 알겠습니다.

○**元詰喜委員** 그리고 또 흑자 위주로, 단기사업 위주로 이것을 하다보면 오히려 수산지원과 관계 없는 일에 돈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저희들이 신용사업 부문하고 지도경제 부문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쪽에서 역시 독립경영을 하고 흑자경영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영평가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협 본연의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元詰喜委員** 금년도 예산을 보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대체로 한·일어업협정이라든지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에 대부분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늘 입으로 얘기하는 기르는 어업 중심으로 하고 연안어장 중심으로 하는 바다목장을 한다는 그런 정책이라는 것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정착성 고급어패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종묘를 양산하고 방류하는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은 소관이 아닙니까?

○**海洋水産部水産政策局長 姜武賢** 어업자원국장 소관인데요, 차관보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바다목장 사업은 통영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남해안에 여수 그쪽 수역에도 시작을 하게 되고 앞으로 동해안, 서해안, 제주도 해 가지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어초라든지 방류사업 이런 자원조성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元詰喜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칠레하고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농민들이 주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업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업 특성을 감안한 단계별 관세인하라든지 셰이프가드 또 원산지 등 무관세화에 따른 보완장치 강구 또 칠레와의 수산업상의 분업과 협력관계의 모색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次官補 朴宰永** 지금 칠레와 FTA문제는 저희들이 5년 후에 관세를 무관세로 하는 것도 10년 후에 무관세로 하는 것 그 어종을 분류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칠레와 지금 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정문안을 서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어업협정 문제를 연계시켜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元詰喜委員** 최근에 두 개 어업협정을 가지고 잘 했네, 못 했네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치밀한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장관님께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 독도개발에 대한 문제가 관심이 되다보니까 이 위원회에 독도개발특별법안을 만드는 동료 의원들의 제안설명도 나오고 있고 또 金元雄 의원이 독도 일부를 대부해 주어 가지고서 유인도화하자 이런 청원이 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독도는 현재 정부의 외교적 입장하고 관계없이 보더라도 실제로 가 본 학자들은 그곳은 보전되어야 될 특수한 생태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 상태 자체가 그렇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도땅은 그것이 지금 생태계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종의 공물로 이렇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불하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元詰喜委員** 그것은 외교적 분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사람들이…….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우리 정부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그 문제가 외교적 분쟁처럼 보이는 시비거리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보더라도 독도를

개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무 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元詰喜委員**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金洪春 위원님은 아까 회의에 잠깐 나오셨다가 정보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계셔서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姜賢旭 위원님은 공무로 해외출장 중이시고 그래서 오늘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지 지금 4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4시간이 경과되어서 지금 6시인데 7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9시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咸錫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盧武鉉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데 묶어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꼭 답변을 듣고 싶어하시는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榮委員**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답변만 하시고 아직 참석 못하신 분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런데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간에 질의내용이 다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같이 답변을 하시고요.

○**崔善榮委員** 재석위원만 답변해 주시고 안 계신 분은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재석위원 답변을 가급적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委員長 咸錫宰** 예,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안 계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들어오시면 따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正彦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어장의 개척사업 추진방안과 보안대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어업협정 이후에 어장을 잃은 어선들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책정하고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했습니다만 해외어장개발사업은 어업인의 출어희망수역에 대한 어업자원의 정보가 미흡하고 입어국가의 조업규제가 많고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등으로 해외어장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는 사업지원 대상을 근해어선이 해외합작투자자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진출가능수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어장정보를 어업인에게 제공해서 진출어선의 위험부담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업인들에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겼습니다만 올해에는 해수부에서 직접 해외시장조사를 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아울러 현지공관을 통한 입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사전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만 그동안의 실적으로 보아서 해외어장의 사정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편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張 위원님께서 어촌공단사업 관련 금년도 예산규모와 장기 청사진 마련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촌경제활성화를 위한 어촌체험관광사업은 우선 금년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중 일부를 활용해서 두세 개 어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는 47억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험과 금년 중에 실시예정인 어촌관광장기발전방향 연구조사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촌관광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컨대 어촌관광사업 체험어장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전에도 개념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후반기부터 이 문제를 우리 부에서 열심히 토론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확실히 하기로 해서 2002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張正彦委員 매우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다.

역시 張 위원님께서 재해대책법의 일원화 필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해관련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은 일반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특별법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피해 어업인의 보호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림부와 우리 부가 공동으로 관장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재해대책법의 일원화는 농림부와도 협의하는 한편 앞으로 재해피해 발생 시 어업인에게 보다 실익이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농민들과 어민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하려고 할 때 행자부 또는 기획예산처가 항상 자연재해대책법과의 관계에서의 형평성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이나 제도를 통합하려고 할 때 형평성문제때문에 농어업인에 대한 다소의 특별한 조치라고 할지 이런 혜택을 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빼앗길 우려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에서 사적인 보험제도로써 어떤 보상대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에 관해서 재해대책과 보험을 묶어서 공적인 어떤 제도를 실무적으로 창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마치 산업재해보상법과 같은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관해서는 상당한…….

우선 제안하고 연구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적 보험제도가 개발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재해대책법이 이것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대책이 되지 않는 제도상의 공백관계에 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이 부분에 농업이 함께 해당되고 어업부분의 비중이 원체 적고 해서 앞으로 농림부와 협의를 하고 당과도 협의를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농민과 어민들

이 대책이 없는 보호 밖에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張 위원님께서 수산물 검사 인력·예산·장비의 대폭 확대로 수산물 검사체제를 완비하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수산물검사소는 125명의 검사전문인력으로 중금속, 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검사장비 106종, 795대를 확보해서 6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납뽀개 사건 이후 수산물 검사 강화에 따라 금년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검사장비 보강을 위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검사장비 187대를 현재 보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 신공항의 검사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부족인력과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예산·인력 동결방침에 따라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張 위원님, 그리고 鄭長善 위원님께서 남북해상운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교역물자는 대부분 해상운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북한 해상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남북교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남북한 해상운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등 해운협력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해운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남북경협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각종 선박운항사항의 제약요인 및 불확실성 해소를 물류비 절감은 물론 이로 인한 남북한 교류증진 증대와 북한의 선대 확충 등을 통한 북한경제 발전과 대외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항만시설이 아주 부족하고 또 설비가 아직 발전되지 않아서 남한에서 선박이 갔을 때 선박이 장기적으로 체류해야 되고 또 그쪽의 항만사용료가 원체 비싸고 이런 이유때문에 물류비가 대단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해양수산부만 무조건

앞장서서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부와 더불어서 항상 남북관계의 문제해결속도에 맞추어서 속도를 조절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욕심대로 앞질러 나가기 어려운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鄭長善 위원님께서 부산신항 투기장 호안공사의 공법문제로 설계변경이 필요한지와 변경시 공사비는 얼마나 증액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공사는 공사비를 절감코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SCP공법과 강제치환을 병행하는 공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는 바 지적하신 대로 점토층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설계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상부층 점토를 완전 제거토록 공법을 변경하였으나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비 증액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증액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하고 세심히 살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鄭長善 위원님께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를 하는 것과 완전히 확정된 후 동의를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협상에 유리한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가 확정된 이후 국회에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협상에서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단 한계선에 대한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어 있고 3월말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협정발효일자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한·중어업협정의 조기발효를 위한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만약 금번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국측에서 우리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협정발효일자를 합의하는 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상반기 중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국의 하절기 휴여기를 고려할 때 하반기 발효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답변은 전략상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는 점에 대한 직접 답변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정하고 비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나 확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이런 전략적 판단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확정하지 않고 비준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략적 차이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중국과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중·일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쪽의 특정금지구역 내지 특정해역에 관해 조약상에 어떤 명백한 표시 같은 것을 꺼려하는 입장과 EEZ경계선 확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이 어업협정이 잠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 이런 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 부분의 표기를 계속 회피하고 있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한국측으로는 이 부분의 협정을 일단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제2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협정이 체결되고 새로운 어업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협정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원했다기 보다는 좀 더 빠른 협정의 성사와 발효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적으로 특별한 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지점의 표시없이 말하자면 협정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왜 이 협정을 발효시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마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면 할수록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협정의 체결과 발효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장관이 된 이후에도 우리 어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빨리 나가게 달라고 이런 요청을 빗발치게 하고 있고 현재 영해에까지 침범해 가지고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때문에 우리 협상의 실무당사자들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鄭長善委員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전략상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요 논의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완결을 짓고 하는 것과 지금 이 상태로 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야당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가장 유리하고 이점이 크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왜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니까 그 본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답변이 이상합니다마는 지난번 16일과 오늘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金洪春 위원님, 張正彦 위원님, 權五乙 위원님, 鄭長善 위원님, 朴燾太 위원님, 金泳鎭 위원님, 李相培 위원님, 許泰烈 위원님, 朱鎭旻 위원님, 朴在旭 위원님, 朴容琥 위원님, 元喆喜 위원님, 李方鎬 위원님, 張誠源 위원님, 文錫鎬 위원님 그리고 金龍學 위원님께서 한·중어업에 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작년 8월 정식서명 직후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최종협상타결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지금 鄭 위원님께서 바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아울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 직후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에는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나 상호입어척수 등 협정운영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현 시점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총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 그리고 동중국해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단한계선에 대해서 상당수준 의견접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반기 내에 협정발효를 위해서는 3월말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협정발효일자를 사전협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정의 주요내용인 입어척수와 허용어획량과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남단한계선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비준동의를 구한다는 그것은 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준동의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사실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거의 협상이 타결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난번 16일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위원님들께서 대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동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했을 때 이번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국회로 비준동의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다음 협정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협정의 발효시

기를 정하고 그 발효시기까지 세부입어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발효시기를 정하는 협상 자체가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비준서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의 발효절차를 밟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뒤로 죽 늘어지게 되면 결국 상반기 발효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상반기에 이 협정이 발효될 수준까지만 가지면 중국에서는 6월부터 9월까지의 휴여기를 이용해서 중국당국이 중국의 어민들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설명하고 이후 출어하지 말 것을 계도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협정의 발효가 뒤로 많이 늦어지게 되면 중국이 그와 같은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에는 중국어선을 우리 서해에서 철수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국내에서 우리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 두고 중국해역에 출어했다가 돌아와야 되는 배에 대한 감척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척사업도 여러 가지 준비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할 수 없게 되고 뒤로 넘어가면서 올해 확보했던 예산들은 또 불용처리되거나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지막에 아직 문서로서, 타결된 결과로서 제시하지 못하고 곧 마지막 입어조건을 타결하면서 그 이후의 일정을 서로 협의해야 되는 이 내용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것이 불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한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회의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자리가 주어지면 지난번 보고서로 드린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으로 바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鄭長善委員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것을 대강 알아듣겠는데 그 두 가지 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고 가는 것과 확정하지 않고 비준해 주는 것이 어떤 장단점이 있고 국가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서면으로라도 이해가 쉽도록 실무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鄭長善委員 서면으로 하시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역시 鄭長善 위원님과 鄭哲基 위원님께서 항만개발계획 수정관련 소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항만개발계획은 아직 관계부처간에 협이가 끝나지 않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입니다.

또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항만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여러 가지 감사원의 지적자료들은 해양수산부가 이것을 숨기려고 하면서 적발되어 지적 당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감사시에 예산확보라든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개방하고 감사원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심각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보고서에는 실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더 욕심을 부려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정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냥 이렇게 문서만 만든 것은 아니고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장관이나 청와대비서실이 전부 함께 참여한 대통령 보고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심각성을 조금 상례에서 벗어나게 문제를 오히려 지적하는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우리 실무자들은 개별적으로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관계부처를 열심히 설득하고 있고 또 장·차관 또한 각기 필요한 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항만개발계획 투자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욕심을 담은 것이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해해 주시고 해양수산부로서는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라는 것이 경직성이 있고 또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 증액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소 무리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민자부분도 중요한 방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민

자는 아주 유용한 수단일 때도 있지만 때때로 확정성이 떨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한 부분이 있고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항만개발계획의 주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신항만이 거의 2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아마 평택항이나 인천항에서도 지금 개발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다 민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대단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자부분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항만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해 낸 것이 컨테이너공단을 좀더 활성화해 나가자 이런 계획입니다.

컨테이너공단이 어떤 점이 유리하냐 하면 과거의 실적으로 봐서 컨테이너공단은 부산에서 투자했던 자기 투자비를, 정확한 기간은 나중에 따로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5, 6년 경영함으로써 투자비를 거의 다 뽑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컨테이너공단이 해외에서 기채했던 차입자금의 금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일반 민간투자회사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 있고 그동안에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민자사업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한다고 가정하면 훨씬 더 효율성 높고 안정된 항만건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의 발족과 더불어서 컨테이너공단의 조직이 다소 개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함께 정부를 설득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역시 鄭長善 위원님께서 항만시설사용료 현실화 문제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항만시설사용료 요율체계는 90년1월26일 고시된 이래 당시 결정된 요율체계를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어서 항만시설사용료의 현실화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에서는 지난 98년에 항만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 5단체에서는 오히려 항만시설사용료 중 화물입항료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폐지, 감면 또는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항만시설사용료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검토 중이며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해양수산부에서 징수하고 있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컨테이너공단이 부두를 건설해 가지고 부두 운영에서 얻는 수입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컨테이너공단이라든지 이런 건설주체가 항만건설비를 회수하거나 또는 재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것하고 직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 사이트에서만 관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鄭長善 위원님께서 남북어업협력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6일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남측에 동해어장 일부를 일정기간 제공하기로 제의하여 음에 따라서 남북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북어업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북어업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인 국가정보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강원, 경북지역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북측이 제의한 동해수역에서의 조업을 포함한 어업협력 방안 등의 제반 문제점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북측에서 회담제의를 해온 상태이므로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이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鄭長善 위원님과 金龍學 위원님께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공식입장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새만금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갯벌의 상실문제에 대하여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여부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갯벌가치에 대한 평가가 아직까지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고 아직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갯벌가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갯벌의 가치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이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새만금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金龍學 위원님께서 광양항 민자유치 관련 P&O Ports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 이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광양항 민자유치는 P&O Ports사와 우선협상을 진행해 오던 중 근래에 여러 외국회사가 투자 의향을 밝힌 바 있어서 우리 부로서는 가급적 모두를 참여시켜서 경쟁시킴으로써 광양항을 보다 빨리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으로 기억하는데 P&O Ports사 또 우리 컨테이너부두공단이 MOU를 체결 하였던 당시에는 이 항만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표명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던 중에 P&O Ports사가 의향을 표시해서 그때는 호주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해 가지고 운영자로 한번 참여할 것을 권고했고 그 권고에 따라서 P&O Ports사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권을 주는 MOU가 체결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협상과정에서 10월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작년 가을, 9월경으로 생각됩니다마는 9월경부터 동부고속회사와 머스크회사가 우리 광양항 2단계의 일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고 또 한편 현대상선에서도 일부를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로서는 국내 선사들이 함께 참여할 때 해운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가급적이면 경쟁을 할 때라야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MOU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던 중에 MOU 기간이 10월 말로 대강 끝이 났습니다.

MOU 기간 동안에 P&O Ports사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3단계 투자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 MOU 투자의향을 좀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어떤 보장책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아마 국제관례상 그런 확실한 보장책을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P&O Ports도 그

것을 응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시간을 넘겼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부로서는 가급적이면 경쟁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에게 참여를 사실상 권고…… 권고했다면 MOU 협상에 위반이 되어서 어려운 것인데 어쨌든 정보를 제공하면서 경쟁하는 형태가 되도록 이렇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연말경까지도 국내 선사들 쪽에 관계를 맺고 있는 쪽에서는 2단계 부두를 부분 부분으로 3선석과 4선석으로 쪼개 가지고 입찰에 부처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 가지고는 3단계 개발과 연계시켜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 P&O Ports라는 참여할 수 있는 회사가 떠나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선사들과 제휴한 외국선사들을 함께 설득해서 이것을 쪼개지 않고 전체를 한 덩어리로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권고 또는 유도해서 이제 지금 대체로 경쟁체제로 입찰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찾아내기 위해서 입찰조건들을 우리가 조절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입찰조건에 내용이 아주 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조금 들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P&O Ports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한 회사들이 몇몇 있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외국과의 거래와 계약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조건을 제시하였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국제간 거래에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의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제적으로는 별로 불투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모두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제기가 있고 난 뒤에 각 사가 적어도 입찰참여에는 불만이 없도록 조건들을 지금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

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말씀하십시오.

○張誠源委員 지금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토론 해 가지고 법률안심사소위에 넘겨야 한다든지 또는 청원심사소위에 넘겨야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속도로 진행되어 가지고는 오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좌우간 적어도 11시 이전까지는 이 안건들이 전부 대체토론 마쳐지고 소위에 넘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지금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장님 그리고 張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질의 중에 사실 우리 부에서 열심히 일해 왔던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나 명예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간결하게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의욕도 한편으로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없는 것 외에는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龍學 위원님께서 선원 수급안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 뽀족한 대책이 없어서 정말 고심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여러 국가라든지 미국은 해기사와 일반 부원, 선원 모두가 다 부족한 상태이고 좀 후진국이라고 하는 저개발국가로 갈수록 해기사는 부족하고 부원은 넉넉합니다. 우리 한국은 해기사는 조금 돌아가는데 부원이 지금 많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것을 조금 지연시키고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추세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을 굉장히 여

러 차례 만나 토론도 하고 대학에 용역도 주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추세로서는 별 대책이 없는 부분이고 우선 선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더 오래 견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든 우리가 수급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최대한 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龍學 위원님께서 남북어업협력사업 추진과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鄭哲基 위원님께서 수산물 생산량 조절 및 가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농진청의 농업관측센터와 유사한 수산물종합관측센터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가격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지금도 대개 시간에 늦지 않게 잘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鄭哲基委員 그것이 지금 일어난에 될 문제는 아니고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그것이 축적되어 간다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어획량의 유통이랄지 이런 것도 예측해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도시·어촌간의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어업에 있어서의 IT화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더불어서 이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鄭 위원님께서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 북항, 부산 신항, 광양항, 평택, 아산에 집중투자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 계획을 짜는 동안에 투자 우선순위를 대강은 살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조사가 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거쳐서…….

○鄭哲基委員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감사원 의견에 대해서

항만국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맞다고 합니다.

○鄭哲基委員 감사원이 지적한 그 의견이 맞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 방향으로 조절을 해나가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찢어 갈라서 해 놓으니까 아무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시급하게 개발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될 항만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항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기 지적을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인지 조절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朴容琬 위원님께서 항만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인천 북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진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朴 위원님께서 아시듯이 인천 남항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 북항부분은 민자가 가망이 없으면 정부투자자로 전환해서라도 조속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容琬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그 다음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로 인한 강화지역 어장피해에 관련해서는 건설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한국해양연구소에 발주해서 용역조사 중이고 이 용역은 다가오는 5월에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지역 어민들에 대해서 우리 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지급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해 정부예산을 선지급 해서 집행하기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朴容琬委員 한국도로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단

에서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단체에서 이것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관께서 그 두 단체에 특별히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사실 도로공사가 강화 쪽으로 흐르는 바다 길을 막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거든요. 처음에는 환경평가를 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바다 길을 막고 보니까 유속이 달라지고 물 흐르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에 갯벌에 완전히 토사가 끼고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공사 쪽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어쨌든 이것이 돈을 지급하려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朴容琬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용역이 5월에 끝난다고 하니까…….

○朴容琬委員 그러니까 그 어민들은 벌써 상당기간 동안을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완전히 열중취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버텨나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알겠습니다.

이상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鄭哲基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께서 장시간 광양항 2단계 운영선사 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장관의 소신이 무엇인가?

아시는 대로 광양항은 신설항입니다. 그래서 인지도에 있어서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항이기 때문에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2단계 운영선사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외국 선사가 와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본 위원이 해왔고 여러 차례 장관께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고 컨공단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소신이 안 서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 몇 사람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정해냈던 원칙이 또 바뀌고 연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해수부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을까? 업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면 물고 늘어지고 이런 것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한번 법률자문까지 받아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발표가 났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지연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국내 선사들은 이미 부산항이나 이런 데 많은 선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광양항의 2단계 운영권 내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일부를 묶어서 하나쯤은 메가포트로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 항만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鄭 위원님! 선석을 3선석, 4선석 이렇게 나누어서 입찰을 하느냐, 묶어서 하느냐라는 것이 외국선사의 참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컨테이너공단은 그것을 나누지 않고 묶어서 입찰에 부쳤습니다. 묶어서 부쳤기 때문에 국내선사만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외국선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鄭哲基委員**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소신대로 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두 번째로는 소신이 없어서 이런 저런 타협을 하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회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의 추진에 있어서 잡음과 의혹이 없어야 됩니다. 잡음과 의혹이 있으면 즉시 제거하고 넘어가고 제거하고 넘어가면 조금 기간이 지체되더라도 갈 수 있는데 잡음이나 의혹이 있는 것을 묵살하고 밀어붙이다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도 없이 그때는 돌아서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鄭哲基委員** 알겠습니다. 항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눈앞에 보이는 이윤에만 급급하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좋은 운영선사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머스크나 허치슨이 들어오기만 하면 P&O와 함께 광양항은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됐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李奎植 청장 답변해 주세요.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李奎植 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朴容璠 위원님, 金龍學 위원님 崔善榮 위원님께서 해양경찰청사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물으신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경청사는 당초에는 인천 송도 신도시지역에 건축계획을 추진하다가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작년 상반기에 대전시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인천시 등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본 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많은 위원님들이 바다 치안부처인 해경청이 내륙지로 옮겨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146인이 서명한 부산이전 촉구서한이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되었고 또 본 위원회의 2001년도 예산심의소위원회에서 전 해양경찰청장은 예산확보와 관련해서 인천에 건축하는 것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경청 이전문제는 이런 일련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현단계에서는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재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대전시민과 인천시민에게 심적 상처를 보다 적게 주는 선에서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다수 국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되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국민 편익과 국가 이익과 해경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在旭·朴容璠·張正彦·鄭長善 위원님께서 한·중어업협정 발효시에 중국어선의 우리 EEZ 침범 불법조업이 예상되고 광활한 해역에 대한 관리대책과 경비함정, 항공기 배치 및 보강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중어업협정 발효시 중국어선의 조업수역이 제한됨에 따라 다회 목적의 EEZ 침범 불법조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중어업협정 경제

선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집중조업해역인 서·남해역에 경비함정 일일평균 30여척과 헬기 2대 내지 3대를 전담 배치하여 해·공 입체적인 경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침범 중국어선 발견시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증강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형경비함정 10척과 중형경비함정 44척, 헬기 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함정 17척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또 초계기 1대와 헬기 1대가 도입될 예정이며 2004년까지 경비함정 8척, 해상초계기 3대를 더 증강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입되는 비행기 1대는 인천에 배치해서 우리나라 EEZ권역을 전담 순찰하고 헬기 1대는 관할이 광활한 제주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容琬委員**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때 존경하는 鄭長善 위원께서 육경이 왜 해경으로 왔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사 사장을 꼭 방송사 출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사 사장이 방송사 사장도 할 수 있고 또 국방부장관을 꼭 군인이 하는 것만도 아니고 민간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전문통이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쪽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많은 직원들이 지금 李奎植 청장께서는 일을 아주 합리적으로 매끄럽고 추진력 있게 잘하신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경청사 이전에 대한 속기록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에서 소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보면…….

참고로 들어주세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姜賢旭 위원이시고 張誠源, 鄭哲基, 孫泰仁, 許泰烈 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원본을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許泰烈 위원이 “만약 예산에 반영되고 인천에 신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장이 “안 되면 불용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전에 안 가는 것이 맞지요?”하고 許泰烈 위원이 물었어요. “빨리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청장 생각은 아니더라도 워라든가 어디에서 로비를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감 때도 또 예산안을 심의할 때도 대전시장이 올라와서 그러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로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에 따라서 그 청의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지 위에서 내려온다든가 어디에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래서 이것이 변동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끝까지 용납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도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警察廳長 李奎植** 알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李奎植 청장님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직원 다 나가도 되겠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李奎植 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경찰청에서 오신 분들은 다 나가셔도 됩니다.

(장내정리)

2. 독도개발특별법안(尹漢道 의원 대표발의)(尹漢道·權五乙·金洪春·金龍學·朴在旭·朴燾太·孫泰仁·辛卿植·李相培·朱鎭旻·許泰烈·金武星·金容甲·金浩一·朴明煥·柳興洙·李康斗·李富榮·李相得·李完九·鄭昌和·鄭亨根·崔鉛熙·李方鎬 의원 발의)

3.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이방호 의원 대표발의)(이방호·원철희·김영진·김동욱 의원의 22인 발의)

4. 船員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0시53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독도개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항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선원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尹漢道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漢道委員** 존경하는 咸錫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尹漢道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독도개발특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UN해양법의 발효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경쟁적으로 선포하여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신국제해양질서의 재편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양질서의 재편기에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적극적인 국내외적 홍보와 외교적 공세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에 말려서 지난 1998년 타결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우리나라 어민의 생존권과 어업피해도 큰 문제지만 영토주권의 상징이며 민족혼과 국가자존의 결집체인 독도가 기존 공해상의 위치에서 중간수역, 즉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됨으로써 민족과 국가자존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고 심각한 영토훼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효적 지배라는 사실만 강조하고 입도까지 제한하여 독도를 국민들과 단절시키고 외부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무대응·무전략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시마네현 주민들의 호적을 독도로 이적하였으며 심지어는 독도를 가상으로 한 대규모 군사탈환훈련까지 실시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항변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독도는 정부만의 소유가 아닙니다. 독도는 그야말로 국가가 우리 땅으로서의 권리를 망각하고 있을 때 조선시대 안용복과 1950년대 홍순철 대장을 필두로 하는 독도의용수비대와 같은 선열들의 애국심과 희생으로 지켜온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나라 해양주권의 상징이며 한민족의 혼과 독립정신이 결집된 간절하고 애달픈 민족의 성역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도를 수호하고 나아가 21세기 해양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향한 역사적 권원을 다져나가는 일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완비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함으로써 국민들의 왕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여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독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수립 그리고 독도입주대책 수립과 입주민 지원,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타 독도 등 영토연구기관, 독도기금의 설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벌칙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견으로 보완해 주시고 동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方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方鎬議員**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사천 출신 **李方鎬**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金東旭, 金泳鎭, 元喆喜** 의원의 22명의 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동법률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굴을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시설에서 생산·가공함으로써 굴 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굴 수출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굴패각매립으로 조성된 국·공유지에 굴껍질을 까기 위한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굴패각매립지를 굴양식어업인이 대부분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그 토지 위에 굴껍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려 한 것입니다.

둘째,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에서 대부분기간을 대부분목적에 따라 1년 내지 10년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굴패각매립지의 임대기간을 20년 범위 내로 좀 더 장기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셋째, 대부분요율·대부료의 산정방법 그리고 대부료의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채정법 제83조제2항의 적용도 배제하여 굴 양식어업인들의 부담

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고견이 피력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이번 임시 국회 내 동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盧武鉉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부 소관법률 중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선원의 승·하선 절차와 퇴직금제도를 개선하여 선원 및 선박소유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선원의 복지향상·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업무를 전담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 교대시마다 승무원명부와 선원수첩을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해구역 이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일부 선원의 승·하선 교대시에는 이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둘째, 계속 근로시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의 경우에 종전에는 선원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원의 경우 육상 근로자와는 달리 복지고용 전담기구가 없어 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므로 선원의 복지향상·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설립하고 동 센터의 사업내용·기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에는 선원의 구인·구직등록업무를 선원 교육훈련기관인 한국해양연수원에서 수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선원의 복지향상·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한국선원복지고용

센터에서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 소관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張仁植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仁植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개발특별법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경과입니다.

독도개발특별법안은 尹漢道 의원 등 24인의 대표발의로 110인 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안되었으며 2000년6월2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여 독도영유권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1948년8월 정부수립직후 독도에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라는 지번을 부여했고 작년 4월7일 행정구역상 명칭을 울릉읍 독도리 산1번지 내지 산37번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 신설에 따른 재원문제, 환경보전과의 조화문제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법안 제4조에서는 이 법에 의한 독도종합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의 독도에 관한 규정이나 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97년12월에 제정된 환경부 소관의 독도등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은 독도를 비롯하여 특정도서, 즉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특정도서를 지정한 후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지정된 특정도서안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해 2000년9월5일 환경부고시에 의거 독도를 포함한 전국의 도서 48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소관의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독도일원은 천연기념물 제336호인 해조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문화재청고시에 의거 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그 구역안에서는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의 입도허가는 문화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경상북도와 울릉군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른 독도관련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독도의 환경보전,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환경부 및 문화관광부가 각각 소관부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소관 독도개발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독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은 다른 관련 법률간에 입법취지, 주무부처, 절차와 내용 등이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 법과의 관계정립이 필요하므로 정부측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독도기금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독도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독도등 영토연구기관의 설립·운영과 대내외적인 홍보이며 이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독도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광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시설이용료 및 관광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역사기록의 정리·분석이 미흡한 실정이었고 국내외의 홍보대책 등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볼 때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독도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문제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정부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금을 설치하려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58조제5항에는 법률의 전문개정이나 제정의 경우에는 청문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계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인 소견으로서는 본 독도개발특별법은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주민거주 및 국민들의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 독도영유권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독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본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한·일간에 외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고도의 입법정책적인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李方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취지는 그동안 연안어촌에서 채취 또는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굴껍질 즉 폐각이 연안에 야적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매립지가 형성되었는 바 이 매립지로 조성된 국·공유지에 현대화된 굴 가공관련 생산시설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되는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장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서는 가공산업 육성시책 강구, 자금의 지원, 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을 규정하여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려는 시책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이 법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즉 굴폐각매립으로 조성된 국·공유지를 대부분 아 굴껍질을 제거하기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그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의 특례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의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볼 때 굴은 매년 1억 1,000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중요 수산물입니다. 최근 주요 수입국들은 원료에서부터 제조·가공제품의 보존·유통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서 위생규정을 강화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어촌의 실정을 보면 굴폐각 야적장 등 간이작업장에서 굴 생산·가공작업을 하고 있어 그 위생수준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기준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굴껍질 제거용 시설물 설치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본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굴껍질을 까기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 축조와 대부기간 20년에 대한 국유재산법 관련조항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선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선원법은 선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박법 적용대상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부선은 선원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선은 주로 항만내에서 유류저장용, 폐기물적재용, 창고용 등 항만부대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부선에는 근로자가 평상시에는 상주하여 근로하지 않고 이동 등 필요시에만 활동하므로 선박안에 상주 근무하는 일반 선원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선을 선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개정안에서는 해상화물운송사업용 부

선은 현행대로 계속 선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8쪽이 되겠습니다.

승·하선 공인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 상단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승·하선 공인제도로 인하여 연근해 어선은 출·입항이 잦고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빈번하기 때문에 입·출항하는 항·포구가 지방해양수산청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공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고 또한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하여 출입항통제소에서 입·출항시 승무원 명부와 승·하선 여부를 직접 점검·확인하는 사항과 공인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본 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공인제도의 취지와 선박소유자의 불편해소를 적절히 조율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행정입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단기근로자계약자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며 다음은 12쪽 장제비 수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선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이 정한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선원이 사망할 경우 선원의 형수, 조카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본 법 개정안에서 이를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원교육기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며 끝으로 한국선원 복지고용센터 설립·지원에 관한 1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근로자와 해상근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육상근로자의 근로복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는 전담기구가 없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선원직은 격리된 선박에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른바 3D 업종에 해당되어 점차 선원직이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원고용,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선원직에 대한 사기진작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인력관리부와 사단법인 한국선원복지고용촉진센터를 통합·개편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신설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며 17쪽에 다만 동 센터의 설립취지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부칙에서 센터의 설립준비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동 위원들이 센터의 설립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원활한 발족을 위해서는 출범 당시 임원이 미리 선임되어야 하므로 설립준비를 위해 위촉된 설립위원들이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 선임까지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그에 관련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이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誠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張誠源委員** 우선 독도개발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전문위원이 상당히 좋은 보고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에 관한 것일지 또 문화관광부 소관의 문화재보호법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각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또는 문화관광적인 그런 개발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특별법을, 물론 尹漢道 의원님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주민 거주 및 국민들의 왕래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독도영유권을 확고하게 해보자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독도개발특별법을 만들어야 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부나 문화관광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독도 보전계획이랄지 개발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굳이 추진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독

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정학적 위치의 특수성 이런 것으로 볼 때 자칫 이것이 한·일간에 외교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원법중개정법률안은 이의가 없고 그다음에 수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러면 尹漢道 의원님의 답변을 바라십니까?

○**張誠源委員**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일단 소위로 넘기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의견진술만 하시고 尹漢道 의원님의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張誠源委員** 예.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도 있는 심사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독도일부지역대부에관한청원(金元雄 의원 소개로 제출)

6.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宋榮珍 의원 소개로 제출)

7.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관한청원(金泳鎭·朴燾太·金敬天·金元基·尹鐵相·朴尙奎·張誠源·崔善榮·沈載權·李方鎬·朱鎭旻·金洪春·辛卿植·朴容琥·張正彦·元喆喜 의원 소개로 제출)

8.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金龍煥·李完九 의원 소개로 제출)

(21시27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독도일부지역대부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6항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7항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관한청원, 의사일정 제8항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관한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독도일부지역대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는 金元雄 의원께서 소개의견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청원소개의건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宋榮珍 의원님 여기 나오셨습니다.

당진항지정에관한청원의 소개의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榮珍議員 자유민주연합 소속 충남 당진 출신 宋榮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盧武鉉 장관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3만 당진군민의 숙원인 당진항 지정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영동권, 제주권 등 6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2011년까지 총 578선석을 확보해서 4억 4,000만t의 화물을 처리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부권에 평택(아산)항 신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택(아산)항에 포함되어 있는 당진군은 서산시와 더불어 충청남도 서북부 일대의 산업 신흥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천혜의 훌륭한 부두가 오랜 역사를 머금은 채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당진항의 지정은 필연적인 사안이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평택(아산)항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 뿐 독자적인 항만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13만 당진군민들은 지난 1999년4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청원과 진정을 거듭했으며 급기야는 지난해 12월에 5만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열화와 같은 당진군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당진항을 별도로 지정할 경우 항만관리의 비효율성과 항만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구와 인원의 확대가 뒤따라야 하는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진항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진항 지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항이 지정되어야 할 필연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청원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참고로 몇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평택(아산)항의 명칭은 그 처음부터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1991년8월1일 청와대 SOC투자조정위원회에서 아산항 및 아산 국가공단 건설추진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같은 해 10월14일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 그 항만의 명칭을 ‘평택항’으로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의 명칭은 평택(아산)항으로 부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의 위치를 경기도 평택시, 충청남도 아산시와 당진군 등 3개 시·군을 항만의 범위로 지정하고도 항만의 명칭에는 평택시와 아산시만을 반영하여 ‘평택(아산)항’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산시는 단 하나의 선석도 없습니다.

물론 항만명칭에 포함된 ‘아산’은 ‘아산만’을 의미하겠습니다마는 항만시설이 전혀 없는 아산시의 명칭은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무역항으로서 훌륭하게 기능하게 될 당진군의 명칭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 지정 당시 평택시측 부두는 건설중이었음에 비해 당진에는 한보철강에 350만t 처리능력의 부두가 존재했었는데도 이러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평택항’으로 지정된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당진군의 3개 부두는 그 관할기관의 소재지가 2개 광역자치단체, 7개 시·군에 이르는 전국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관리체계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의 외청인 지방해양수산청 역시 당진화력부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고 나머지 2개 부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출장소에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운항만청을 제외하고는 관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에서의 항만관련 업무를 평택항의 평택시측 부두는 경기도에서, 당진군측 부두는 충청남도 산하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해양수산부만 불합리한 관리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로 당진항이 현재처럼 평택(아산)항에 예속되고 공식이름도 없는 불개항으로 나뉘어져 방치되어 있을 경우 해운 및 무역상대국 관련업체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진군 내에 위치한 한보철강, 동부제강, 당진화

력, 환영철강 등이 연간 1,133만t의 화물을 수출입하게 되며 당진군 내 3개 부두에 접안하는 외항선은 연간 500척을 넘어서고 있으나 해운과 무역서류에 나타나는 수출입 항구명칭은 당진, 평택, 아산 등으로 기재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당진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항만수요자들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 산재한 7개 도시에 위치한 각급 기관에 사업등록을 해야 함은 물론 수시로 7개 도시를 오가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문제점들은 항만관련업체가 당진 입주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풍부한 당진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넷째로 당진은 역사 깊은 항구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8개 무역항 중 유일하게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진은 일찍이 통일신라시대부터 당나라와 교역하면서 중국 대륙을 향한 무역의 관문으로서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또한 당진군 해안에는 통일신라시대에 큰 나무라는 뜻의 대진으로 불리던 한진항이 있으며 옛날 항구였음을 알게 하는 장고항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까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옛 지도를 보면 웅포, 용진, 채운포, 범근내포 등의 포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13곳에 조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구도시로서의 역사성을 지닌 지명은 그 자체가 국가적인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진항을 평택(아산)항에 예속시키는 결정은 역사와 전통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만일 당진항 지정이 무산될 경우 당진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5만 여명의 군민이 서명을 한 바 있으며 13만 군민 모두가 한결같은 염원으로 당진항의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진항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미 결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는 당진항지정범군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당진군내의 여러 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국가적인 낭비가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세계인이 함께 사용하는 해도에 엄연히 존재해야 할 당진군이 평택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동해의 일본해 표기 문제만큼이나 거센 반발을 사

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잘못을 조속히 바로잡고 당진항을 지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 지정을 요청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진항을 지정하는 것이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대 중국 무역 및 남북교류의 교두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며 철강 등의 동북아 화물유통 중심지로 거점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게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려 깊게 판단해 주시고 반드시 당진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盧武鉉 장관님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容琥 의원님 나오셔서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容琥議員 새천년민주당 인천서·강화를 출신 朴容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咸錫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 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이 처한 제반 환경은 해양오염, EEZ 선포와 한·중·일어업협정에 따른 어장 축소와 수산자원의 고갈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어선감척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일 뿐 정작 계속 어업을 통한 수산물 식량화에 기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정책은 미흡한 형편입니다.

특히 어업인에게는 어선이 중요한 생산도구이자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선이 조업 중 침몰되거나 파손되는 사고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어 3척 중 1척이 매년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를 보상하는 정부차원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현재로서는 생산자단체인 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선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기준으로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의 66%, 농업소득의 82%에 불과하여 생계형 어업에 종사하는 영세어업인들은 최저생계비 조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제가입을 위한 비용지출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업인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어선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제료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함으로써 어선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며 그것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본 청원서 제출 이후 10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50%의 국고지원을 위한 정부예산 8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그 지원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제가입이 필요한 범위까지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선공제 국고보조대상을 전 어선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형편상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선박법상 동산으로 분류되는 20t까지는 조속히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아무쪼록 본 청원에 대해 거는 영세 수산어민의 기대와 희망을 감안하시어 실질적인 어업인의 지원과 수산업 발전에 작으나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李完九 의원께서 나오셔서 소개의견을 말씀하셔야 합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청원소개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張仁植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요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일부지역대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 및 회부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0년7월10일 金元雄 의원의 소개로 서울 종로구 낙원동 48-1 종로오피스텔 807호 독도유인화국민운동본부 황백현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2000년7월6일 독도 일부지역에 대한 대부를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서를 울릉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민간단체가 독도 일부토지를 대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기록을 갖게 되면 국제법상 유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등 독도영유권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민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는 동일한 내용을 청원으로 제출하여 동 민간단체의 독도 일부지역 대부신청 민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청원인이 울릉군에 제출한 독도 일부지역 대부신청 민원서 처리결과를 보면 울릉군은 독도의 재산관리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민원서를 2000년7월19일 소관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첩한 바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이첩받은 이 민원에 대하여 독도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31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는 잠종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인 독도의 일부지역에 대한 대부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2000년7월22일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취지는 독도 일부지역 대부민원에 대하여 국회차원에서의 지지결의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원사안에 대해서 행정부가 이미 그 처리를 종결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당 위원회에 독도개발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청원을 독도개발특별법안을 심의하게 될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병합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진항지정에 관한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충남 당진군 관내에 이미 건설 또는 건설예정 중인 4개 부두 21선석을 평택(아산)항에서 분리하여 당진항으로 독립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현행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항만법 제2조 정의규정

제2호에서 지정항만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평택(아산)항은 항만법시행령에 의거 86년12월5일 지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무역항입니다.

다만 86년12월5일 개정된 항만법시행령 별표에는 평택항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79년12월21일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후 이 지역의 항만과 산업기지의 명칭이 평택 및 아산으로 혼용되어 온 관계로 95년9월10일 평택(아산)항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의하여 현재 이 항만명칭을 평택(아산)항으로 병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만의 지정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만의 입지여건, 건설계획, 항만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서 당진항 지정을 건의한 수역은 현행 항만법시행령에 의한 평택(아산)항의 항계 내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상 장래 평택(아산)항 예정지구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동일 또는 인접한 수역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경기(평택)와 충남(당진)으로 분리하여 별도로 항만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항만 관리·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둘째, 별도의 항만관리에 따른 추가 기구·인원·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평택(아산)항의 명칭을 둘러싸고 현재 경기도의 평택과 충청남도의 아산지역 주민간에 서로 당해지역 명칭을 채택하여 주기를 바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계기관의 의견, 항만건설 진척상황, 항만이용도,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어선공제료국고보조에 관한 청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요지는 소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1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시 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0t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당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행맨손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무신고 관행맨손어업인에 대해서 어업권(허가, 면허, 신고)을 가진 어민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해 주고 관행맨손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어업권원부에 등록토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수산업법령의 관계 규정을 신고 없이도 맨손어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행 맨손어업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무허가·무신고 업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 왔습니다.

4쪽, 법원의 판결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신고 맨손어업을 관행어업으로 8년 분의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에서 63년2월28일에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계속 이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99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맨손어업자들에게 2년분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끝으로 관행어업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일부 지역의 민원인들은 관행어업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에 대해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수산업법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99년7월 22일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측의 의견을 보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수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면허·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무신고 맨손어업은 제도권 밖의 법적 근거가 없는 어업이므로 본 청원에서 요구하는 면허어업 수준의 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행 수산업법에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어업을 인정하여 수산업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인들의 요청사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맨손어업이라고 할지라도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시

행규칙에서 무신고 어업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에 3월분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공특법상의 지원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합적인 내용을 청원심사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咸錫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4건의 청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소개하신 의원님이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鄭長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長善委員** 평택(아산)항에서 당진항을 분리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리했을 때하고 지금과 같이 했을 때하고 어느 것이 국가적으로 더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현황을 향후계획까지 포함해서 보면 이 항의 주력은 평택항입니다.

평택시에 약 40여 개 선좌가 들어서게 되고, 화성군에 2개 선좌, 당진군에 15개 선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로 당진군은 한보철강, 동부제강 등의 전용부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은 공용항만으로서 앞으로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항만기능을 하게 됩니다.

2000년의 화물처리량을 보면 평택이 700만t, 당진이 177만t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화성에서도 독립시켜 달라고 했을 때 화성도 독립을 시켜야 되는지 이 문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을 보면 부산신항 같은 경우는 부산과 경남에 걸쳐 있습니다. 광양항은 광양과 여수에 걸쳐 있습니다. 마산항은 마산과 창원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 부산신항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선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부산신항도 분리를 요구했을 때 분리를 할 것인지

또 광양도 그렇게 할 것인지?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조금조금씩 나누어서 운영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항 내에서 당진과 평택은 동일수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업무, 항로관리,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인원이나 관리관청의 새로운 신설 등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관세지역 지정이 평택항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인데 선결조건이 화물처리량 1,000만 t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분리될 경우 양쪽에 다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분리하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서 서로 조화하고 협력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의견 개진으로 끝내시는 것이지요?

○**鄭長善委員** 필요 없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五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權五乙委員** 청원 이전에 조금 전에 독도개발특별법안을 尹漢道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張誠源 위원께서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독도개발특별법에 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보는 시각과 여당인 민주당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어차피 독도개발특별법안이 제정법이라면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전체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법체계상 그리고 타부처의 소관사항에 여러 가지 배치되는 점이 있는지?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는 까딱하면 이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든지간에 법제정 절차에 걸맞는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모든 절차를 좀 더 밟아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그것은 일단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법제정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심사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되고 새로운 법은 우리 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법제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니까 아마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張誠源委員** 독도 일부지역 대부에 관한 청원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청원을 낸 취지가 아까 독도 개발특별법안의 취지와 크게 보아서 상당히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독도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문제이지 이것이 지금 개인이 일부지역 대부, 어떤 세금 납부기록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한·일간에 독도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니고 그리고 지금 독도를 무인도로 보았는데 독도가 결코 무인도가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경비대 약 40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또 독도형편을 보면 독도가 그렇게 임대를 할 수 있는 넓은 땅도 아니고 대단히 가파르게 협소하게 지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럴 형편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원의 내용과 취지는 그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땅으로 고착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까마는 이미 독도는 현실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렇게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땅으로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독도 일부지역을 대부함으로써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당진항 지정에 관한 청원은 이것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두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가지고 이런 청원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선공제료국고보조 이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일정의 보험료를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10t미만의 선박…….

○**張誠源委員** 아니 다른 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농업용 기계에도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張誠源委員** 그것이 보험입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공제입니다.

○**張誠源委員** 농업의 경우에 그것을 얼마를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50%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10t 미만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張誠源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龍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龍學委員** 당진항 지정에 관한 청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만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항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항만건설이라든지 관리, 운영 이런 것에 중점을 두어서 효율적 관리측면을 고려해서 항구의 명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宋 의원님과 鄭 의원은 관점이 틀려서 그런지 어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쪽 분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로 보면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지역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또 자꾸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그런 쪽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실익을 취하는 그런 쪽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평택항으로 하는 것이 득이 된다 그러면 평택항으로 해 두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당진주민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평택 입장에서 당진항이 좋겠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당진항의 명칭이 좋겠다 그럼 당진항으로 고쳐주시고 그 경우에 鄭의원님이 또 당진주민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지역우월주의를 떠나서 좀 더 실익을 갖추는, 쟁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청원이 해결되었으면 하고 가능하면 이런 청원이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독도일부지역대부에 관한 청원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독도개발특별법안과 병합심사토록 하고 나머지 3건의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 관한협정비준동의안(관련위원회의견제시의견)
(계속)

(21시57분)

○委員長 咸錫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동의안에 관한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동 건은 1차 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는 후 답변은 오늘 회의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權五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權五乙委員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요. 오늘 실제로 해수부담당국장과 외통부심의관으로부터 별도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수부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수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디. 실제로 중국의 어선 몇 척이 얼마나 어획해 가는지 주먹구구식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늦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해수부의 답변을 별도로 듣기 이전에 다시 한번 해수부의 담당국장이나 장관이나 차관께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우리 여야위원들한테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에서는 이것이 아직까지는 대외비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당연히 빨리 비준안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단순한 논리 하나 가지고 자꾸 우리 상임위에서 빨리 의견을 제시해 주고 우리 국회에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해수부에서는 정말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에 4월 넘어가도 좋겠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아직 까지 시간은 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張誠源 간사님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담당국장이나 차관이나 장관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답변 듣고 저희들의 의견을 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답변 들어보아야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논란만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시기 전에 그런 절차를 거쳐 줄 것을 요청하고 또 이점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일단 여야위원들한테 해수부에서 또 외통부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 우리 의견을 내는 그런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張誠源委員 한나라당의 존경하는 權五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민주당 간사로서 제 의견도 똑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적인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

다마는 사실 양국간에 두 나라 사이의 협정이 정교해야 한다라고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협상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북한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마는 협정 자체로 볼 때는 좀 허술한 그러한 구석이 많이 있다 이런 느낌을 솔직히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權五乙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랄지 또 협정문안을 섬세하게 만들지 못한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가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아직도 협정문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해양수산부가 설명의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정에,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결코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충분히 설명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한·중어업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간사님들께서 같은 의견으로 다음 우리 회의때 다시 한번 장관으로부터 어업협정내용에 관해서 납득이 가도록 하는 설명을 듣고 그때 가서 우리 의견을 통외통위에 회부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孫泰仁委員** 다음 회의가 언제입니까?

○**委員長 咸錫宰** 27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회의는 그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더 설명을 듣고 그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해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의견을 회시토록 하자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납득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이 건에 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과 3당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미 위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 듣고 납득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고 앞으로 있을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해당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앞으로 회의 때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權五乙委員** 물론 저희 농해수위에서 의견을 내나 안 내나 통외통위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원장이나 3당 간사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한·일어업협정, 한·중마늘협정 그 다음에 한·중어업협정 이런 과정에서 항상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다 뒷받침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와 외통부가 정말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와서 당별로 설명을 해 주든지,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야 전문위원 보고 사전에 준비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서로의 의사만 합치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제시를 하겠다고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하고 조금 차이는 있더라도 이 전체위원회에서 한번 더 거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사실은 이미 지난번 회의 때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이미 위임을 받은 바 있습니다.

○**鄭哲基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어업협상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점도 지적하고 많은 것을 토론을 했습니다.

우리 전체 회의에서 또 한번 거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미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두 분 간사와 위원장에게 이 의견서 작성에 대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야기 해봐야 또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한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委員長 咸錫宰 예, 위임은 받은 바 있습니다.

張誠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張誠源委員 간사위임 편의라고 할까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업협정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편의에 익숙해지는, 마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통과예체처럼 이렇게 여겨져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사위임 방식보다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權五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좀더 충분히 설명을 하고 특히 이 협정의 비준과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 우리 어민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어업에 어떠한 손실이 오는 것인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피부에 와 닿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들의 의견을 적어서 통외통위에 보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哲基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鄭哲基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鄭哲基委員 전문위원, 지난번 회의 때 위임한 사항을 속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權五乙委員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鄭哲基委員 두 분 간사하고 위원장님께 위임된 사항이 없어요?

○委員長 咸錫宰 타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회시 요청을 보면 그것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서 여러 문안을 작성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법개정안이든지 여러 법률안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鄭哲基委員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무슨 진전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오전, 오후 통해서 특히 야당위원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심

도 있게 지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되풀이한다는 것은 정말 비능률 아닙니까?

○委員長 咸錫宰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시하기 전에 그 문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다 보여 드리고 이의 없을 때 보낼 것입니다.

○孫泰仁委員 제가 잠깐 말씀할게요.

저는 발언시간이 없어서 발언을 못했는데 한·중 어업협정 내용 가운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죽 들 어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30도 4분 이남과 이북, 앞으로 555해구 주변의 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孫泰仁委員 거기에서 지금 해수부쪽 답변은 뭐냐하면 중국측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예.

○孫泰仁委員 그 외에 양자강 문제도 있고 특정해역 문제도 있고 끄집어 내보면 근원적으로 다 올라가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한·중간에 있어서 잠정합의가 되었다 하는 이 담보를 솔직한 얘기로 해양수산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중어업협상안을 놓고 지금까지 지적된 부분을 일단 서면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해수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회의를 한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간사하고 위원장님께 위임을 한다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咸錫宰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한·중어업협정에 관한 문제점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으니까요…….

○鄭長善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를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잘못하면 애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지 않고 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만 빨리 통과를 시키라든지 아니면 통과시키지 말라든지 이런 의견을 넘겨주어야지 애매하게 이런 의견만 취합해서 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孫泰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위원들한테 넘겨주시고 양당 간사께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咸錫宰** 우리 위원회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일단 회부하기 전에 드릴 테니까…….

○**權五乙委員** 위원장님,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의견조율이 있었어야 되는데 오늘 해수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전에 의견조율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이렇습니다.

내가 해수부나 외통부의 이야기를 듣다가 깜짝 깜짝 놀라는 것이 이분들이 중국의 관리인지 대한민국의 관리인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입장을, 걱정을 많이 합니다.

6월1일부터 효력을 발효시켜야 어선감척이 순조롭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고, 이 나라 어민들 이야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와 중국측의 입장을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해수부나 외통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중어업협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설명할 때는 못 느낄 것입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도무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6월1일 효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한 통계에 신빙성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1만 2,000척을 몇 달 사이에 2,400척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러면 1만 2,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라는 것입니다 허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해수부나 외통부가 본 위원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 통계라든가 이것이 신뢰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예를 들면 한나라당 위원들이 별도로 1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까지 정말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못한 내용이 있으면 와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해달라,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든 듣고 판단해 가지고 빨리 해주어야 될 것 같으면 바로 빨리 해주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당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야당 입장에서 우리 야당은 반대를 한다 입장을 정리하겠다 오늘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통외통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외교교섭할 때 보면 당사자인 상임위의 의견은 실제로 그냥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들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구역 정하는 것은 통외통에서 이미 하고 실질적으로 입어교섭하고 다음에 어획량 교섭하는 것은 해수부가 맡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혼선이 생기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제까지의 관례도 그랬습니다마는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습니다. 설사 이번 임시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27일 통외통 회의가 소집되어 있고 28일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고, 이것은 법사위에 거칠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사일 동안에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민련은 자민련대로 해수부나 외통부에서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장님, 장관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예, 말씀하십시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權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공무원이 중국 입장 살피고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어떻든 저는 국정감사 하던 시기에 한·중어업협상에 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하기 어려우므로 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주시면 그때 그때 진행상황을 다 보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노력해왔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이것을 올

릴 때는 대개 보고되었고 지난번 보고서에 윤곽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오늘 구두로 보고드리면 대강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판단은 저희가 잘못 났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리 있게 답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것 전혀 못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십시오. 많은 지적과 많은 질책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공개된 곳이든 비공개된 곳이든 소위 누락됐다고 하는 주요쟁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마당이고 하면 개별적으로 들고 다니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공개회의든 비공개회의든 공식회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질서를 정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못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국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가을에 하라든가 겨울에 하라든가 겨울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李方鎬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咸錫宰** 李方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方鎬委員**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어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빨리 비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고 어차피 6월 중으로 협정이 발효되어 가지고 서해안에서 우리 어민들의 조업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한·중 관계가 성립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입장에서 나는 빨리 이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는 것이 다른 큰 틀은 이제 거의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은 찾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과도수역을 내린다 그리고 양자강 유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거의 다 협정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큰 프레임은 짜졌다 그 말입니다.

물론 아쉬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조업질서가 유지되는 부근에서 우리의 권익문제, 그리고 실제 실무협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과도수역이지만 어제 그제 보고에서 보면 이대로 한

다고 그러지만 어장성 문제에 따르는 우리 과도수역에서 어떻게 조업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세세한 문제, 그리고 중국어선을 규제할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우리가 통제로 다해주고 나서 뒤에 실무협상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손실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무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충정에서 동료 權五乙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인데 지금 장관이 답변하는 자세를 보면…… 아까 관료들이 중국 편을 드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채찍을 해서 좀더 우리 입장을 강하게 해달라는 선언적인 의미인데 장관의 답변하는 자세가 낱말 하나 하나,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꼬투리잡고 그런 식으로 답하는 국무위원의 답변자세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은 다소 정치적인 선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쪽은 뭔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득을 시키려고 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치고 받는 식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며 또 이번에 안 되면 9월까지 좋다, 연말까지 좋다 하는 식으로 나왔는 식의 답변자세는 장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장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참고 견디면서 이쪽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되지 어떻게 장관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나자빠지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겠어요? 그것 고쳐야 됩니다.

○**海洋水産部長官 盧武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咸錫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고 해당 통외통위에 보내겠다 하는 것은 아까 權五乙 간사위원님이나 張誠源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하고 다 같습니다. 통외통위 회의가 있기 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더 보고 받고 질의도 하고 답변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李方鎬委員**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 간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하게 진행되는 실무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

고 나서 의견을 붙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열든지 아니면 공개하기 어려우면 비공개로 하든지 그래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무협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咸錫宰 알겠습니다.

27일에 통외통위 회의가 있고 또 그 이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盧武鉉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산회)

.....

청원소개의견서

독도일부지역 대부에 관한 청원건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 분명한 독도를 <日本國 島根縣 隱伎郡 五箇村 竹島>라고 일본토지 대장에 등기하고 땅값도 5,721,604원으로 책정했고, 1906년 4월 3일 일본의 <竹島 漁獵合資會社>가 시마네현에 독도 일대 어업권을 신청하여 동년 7월 2일에 임대한 사실도 있고, 최근에는 독도 광업권을 일본인이 신청했고 - 세금까지 일본 국가에 낸 적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1999년 말에는 일본인 5가구 6명이 독도에 호적까지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다간 독도를 일본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하고 -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사수해야겠다는 우리 국민의 불타는 의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도 유인도와 국민운동본부는 99년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고 더 나아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 독도대부신청서를 2000년 7월 6일 울릉군청에 제출했습니다. 국가간 영토소유권 분쟁시 국제법은 누가 그 영토에 대해 입법·사법·행정권을 행사했느냐를 중요한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상기 대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민간 단체 또는 민간인이 독도에 세금을 낸 기록을 가지게 되므로 신한일어업협정이 끝나는 2002년 1월 22일 이전에 독도를 우리땅으로 고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기록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릉군청에 신청한 독도대부신청이 독도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아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2000년 7월 10일

국회의원 김 원 응



청원 소개 의견서

관행맨손어업에 대한 피해보상 청원과 어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건

1991년 3월 농림수산부가 고시하고 농업기반공사(당시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중인 홍보지구 종합개발로 인하여 어장을 상실한 충남 보령시·홍성군 일대 면허어업인은 1992년 11월 피해조사 용역결과에 의하여 농업 기반공사로부터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206명에 달하는 관행맨손어업자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의 가계 지출비 3개월분만 지급하여 이 가운데 507명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낮은 이주대책비를 지급받았을 뿐 그 외 대다수 관행어업인들은 적절한 보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어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 소개 의원으로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1. 보령시·홍성군 일대 피해지역의 관행 맨손어업 어민들은 국가의 공유 수면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장래이익이 일실된데다 적정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등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 피해 관행어업인들은 적절한 보상을 정부당국에 수십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등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어민에 대한 어업보상은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며 비록 관행어업일 경우에도 수익환원법에 의거하여 장래 기대되는 어민이익에 대한 손실이 있는 만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보상에 대한 조사·평가가 사업시행자에 의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사회적 정의와 공평에 위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들 관행 맨손어업인에게도 어업권을 가진 어민에 준하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는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따라서 청원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전업하여 국민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일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익상실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유사사례에 대비하기 위하여 어업손실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0. 9. .

청원소개

국회의원 김 용 환



국회의원 이 완 구



○出席委員(19人)

權五乙	金淇春	金泳鎭	金龍學
文錫鎬	朴容琥	朴在旭	朴燾太
孫泰仁	元喆喜	李方鎬	李相培
張誠源	張正彦	鄭長善	鄭哲基
崔善榮	咸錫宰	許泰烈	

○出張委員(1人)

姜賢旭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金基英
전문위원	張仁植
입법심의관	李元鐸

○委員아닌出席議員

宋榮珍 尹漢道

○政府側參席者

해양수산부

장관	盧武鉉
차관	洪承湧
차관보	朴宰永
기획관리실장	金成洙
해양정책국장	李龍雨
해운물류국장	徐廷皓
항만국장	金英南
수산정책국장	姜武賢
어업자원국장	朴德培
국제협력관	申平植
안전관리관	金性奎
공보관	韓駿奎
감사관	梁炳奎
비상계획관	李殷大
해양경찰청	
청장	李奎植
차장	李旻祐